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 · 인도 CEPA 개선방향

2016년 9월

뉴델리지부 김남규 차장

뉴델리지부 구본우 연구조원

통상연구실 이근화 연구원

CONTENTS

[요 약]	i
I. 연구배경	01
II. 한 · 인도 교역동향 및 CEPA 평가	02
1. 한 · 인도 교역동향	02
2. 한 · 인도 CEPA 개요	05
3. 한 · 인도 CEPA 평가	06
III. 한 · 인도 CEPA에 대한 무역업계 설문조사	11
1. 조사개요	11
2. 분야별 응답결과	12
IV. 한 · 인도 CEPA 분야별 개선 과제	16
1. 상품양허분야	16
2. 원산지 결정기준 분야	20
3. 무역원활화 및 관세행정 협력	21
V. 결론 및 시사점	23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뉴델리지부 김남규 차장

통상연구실 이근화 연구원

(☎ 02-6000-5810, Nkkim01@kita.net)

(☎ 02-6000-5263, Kunalee@kita.net)

지난 2010년 1월 1일 발효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수출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한·인도 CEPA 수혜품목 수출은 연평균 8.6% 증가하여 전체 對인도 수출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인 3.45%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도시장에서의 수출경쟁 심화, 저조한 CEPA 활용 등으로 우리나라의 특혜세율 선점효과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인도 CEPA 관세인하 효과 가시화,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증가로 인도에서의 수출경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은 수출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對인도 수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기업들은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엄격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낮은 관세인하 효과 순으로 CEPA 활용의 애로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CEPA 개선협상시 원산지기준(결합기준) 완화, 양허품목 확대, 기존 협정세율 추가인하가 협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도의 수입수요가 확대되는 품목과 일·인도 CEPA 대비 양허열위 품목을 중심으로 인도시장 추가개방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으로 양허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추출한 결과 석유화학(71개), 기계류(35개), 전기전자(30개), 수송기계(22개), 철강금속(16개) 등 200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동 품목들의 양허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주력산업의 對인도 수출경쟁력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EPA 활용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어 온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화하고 일·인도 CEPA에 비해 불리하게 양허된 원산지결정기준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HS2002 기준으로 타결된 한·인도 CEPA 양허표를 현행 HS2012 또는 새로운 HS2017 기준으로 개정하고 정부간 채널인 관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며 애로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문

I. 연구배경

■ 한·인도 양국 정부는 금년 6월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

-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거대 신흥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인도는 물론 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었음
 - 인도는 2010년 당시 기준으로 GDP 세계 7위, 인구 세계 2위 국가로, 對한국 수입규제가 많아 CEPA체결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음
- 한·인도 CEPA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여타 FTA와 비교시 관세양허 수준이 낮아 개선협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세계경제 부진, 중국의 인도진출 확대 등의 영향이 없지 않으나 CEPA 발효이후 양국간 교역은 협력 잠재력과 양국 경제규모에 비해 미흡
 - 특히 일·인도 CEPA('11.8월 발효)에 비해 한·인도간 양허수준이 더 낮고 원산지 결정기준도 복잡하여 수출업체가 애로요인으로 지적

■ 본 연구는 개선협상 추진에 따라 양국간 교역동향 및 CEPA 성과를 분석하고 상품양허 확대 및 원산지기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수출기업 설문조사와 함께 한·인도, 일·인도 양허수준 및 무역통계를 비교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시행코자 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추진 주요 일지>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11.1.	제1차 장관국장급 공동위원회	CEPA 개선 추진 합의
2014.1.16. 2015.5.18.	양국 정상회담	CEPA 확대 합의
2016.3.3.	한·인도 CEPA 개정협상 공청회	개선협상을 위한 국내절차
2015.3.30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2015.5.10.	국회보고	
2016.6.17.~18.	제2차 장관급 공동위원회	CEPA 개선협상 개시 선언
2016.10.	1차 협상회의(예정)	2017년 말 타결 목표

자료 : fta.go.kr, 언론보도 종합

Ⅱ. 한·인도 교역동향 및 CEPA 평가

1. 한·인도 교역동향

■ CEPA 발효 첫해인 2010년중 양국간 교역액이 40% 이상 급증한 이후 세계경기 침체, 루피화 평가절하, 저유가로 교역액이 횡보상태를 보임

- 對인도 수출은 2010~2011년 중 연평균 26.7% 증가한 후 2012~2013년은 -5.2% 감소, 2014년 12.4% 증가, 2015년 -5.9% 감소로 등락을 거듭함

– 2014년은 인도 내수호조로 수출이 12.4% 증가했으나 2015년은 저유가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하락, 루피화 절하로 인한 인도 구매력 감소로 수출이 5.9% 감소

* 對인도 수출(%) : 42.7('10) → 10.7('11) → -5.8('12) → -4.6('13) → 12.4('14) → 5.9('15) → -3.5('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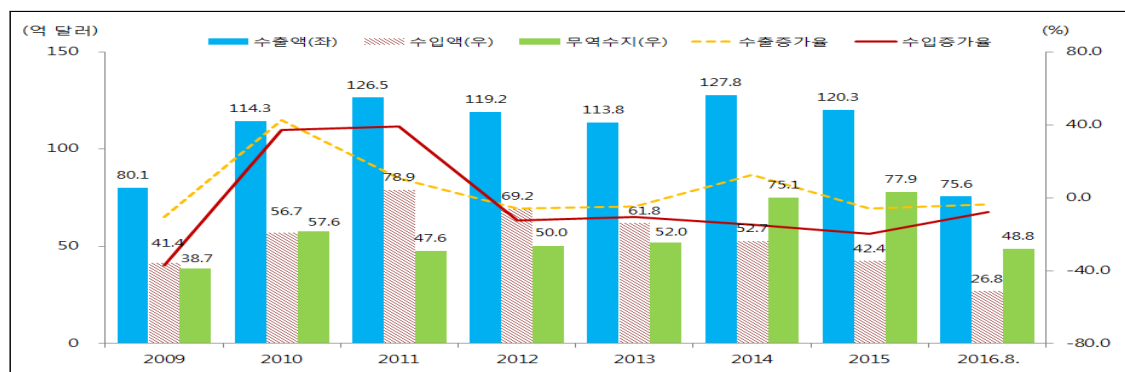
* 루피/달러 환율 : 45.7('10) → 53.5('12) → 61.0('14) → 64.1('15) → 67.2('16.1~8)

- 對인도 수입은 2010~2011년 중 연평균 38.1%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시현

– 인도로부터 나프타 및 1차금속 등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많으나 한국의 수출둔화 및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對인도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

* 對인도 수입(%) : 37.0('10) → 39.1('11) → -12.3%('12) → -10.7('13) → -14.7('14) → -19.6('15) → -7.8('16.1~8)

<한국의 對인도 무역동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품목별로는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무선교환기, 열연강판 등이 對인도 수출을 주도

- 수입은 나프타, 알루미늄, 화학원료, 면 등 원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짐

<한국의 對인도 수출입 품목>

(백만달러, %)

수출	2015년	2016. 1~8.	수입	2015년	2016. 1~8.
합성수지	952 (-10.1)	604 (-9.3)	나프타	831 (-52.0)	568 (2.0)
자동차부품	1,177 (10.6)	588 (-19.8)	알루미늄괴및스크랩	492 (42.1)	335 (1.4)
무선교환기·중계기	683 (40.4)	320 (-6.9)	기타정밀화학원료	198 (-1.4)	132 (-1.6)
윤활유	458 (-37.1)	297 (-8.6)	합금철	180 (-8.3)	88 (-28.4)
열연강판	576 (40.4)	269 (-38.1)	박류	201 (-30.7)	76 (-48.6)
무선통신기기부품	726 (54.8)	259 (-10.4)	의약품	108 (-5.6)	72 (-1.3)
집적회로반도체	268 (3.3)	252 (79.0)	면사	132 (-11.7)	69 (-27.9)
아연괴및스크랩	158 (19.7)	242 (116.0)	아연괴및스크랩	82 (31.2)	65 (25.7)
기타석유화학제품	358 (-28.3)	240 (-4.9)	자동차제어기	88 (64.6)	58 (-7.8)
냉연강판	425 (-29.8)	215 (-8.7)	순면직물	81 (43.7)	51 (-7.7)
전체	12,030 (-5.9)	7,564 (-3.5)	전체	4,241 (-19.6)	2,682 (-7.8)

주 : MTI 4단위 기준,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가공단계별 수출은 소비재와 중간재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수입에서는 소비재, 1차산품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중간재 비중은 하락

- 수출입 규모가 가장 큰 중간재의 경우 수출은 비중 상승, 수입은 하락
 - * 수출비중('10년 → '16.1~7, %) : 소비재(1.8 → 2.2), 중간재(74.7 → 80.6), 자본재(22.3 → 16.1)
 - * 수입비중('10년 → '16.1~7, %) : 1차산품(6.3 → 9.8), 소비재(1.9 → 6.4), 중간재(90.4 → 78.6)

<가공단계별 對인도 수출입 현황>

(백만달러, %)

	수출			수입		
	2010년	2015년	2016.1~7월	2010년	2015년	2016.1~7월
1차산품	125 (1.1)	160 (1.3)	75 (1.1)	358 (6.3)	319 (7.5)	227 (9.8)
소비재	210 (1.8)	158 (1.3)	148 (2.2)	108 (1.9)	255 (6.0)	148 (6.4)
자본재	2,555 (22.3)	2,182 (18.1)	1,078 (16.1)	77 (1.4)	229 (5.4)	118 (5.1)
중간재	8,542 (74.7)	9,527 (79.2)	5,396 (80.6)	5,130 (90.4)	3,437 (81.0)	1,814 (78.6)
- 부품	3,132 (27.4)	3,604 (30.0)	1,968 (29.4)	153 (2.7)	266 (6.3)	150 (6.5)
- 소재	5,410 (47.3)	5,924 (49.2)	3,428 (51.2)	4,978 (87.7)	3,171 (74.8)	1,664 (72.1)
기 타	2 (0.0)	1 (0.0)	1 (0.0)	0 (0.0)	0 (0.0)	1 (0.0)
전 체	11,435 (100)	12,030 (100)	6,698 (100)	5,674 (100)	4,241 (100)	2,309 (100)

주 : UN의 BEC 가공단계별 무역코드로 연계하였으며 ()내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최근 인도 경제동향

■ 2012년 이후 세계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는 서비스 수출 호조, 내수시장 성장 및 해외직접투자 유입증가로 높은 성장세 시현

- 인도경제는 2015년 7.6%, 2016년 1분기 7.8% 성장하여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임

* 2016년 인도 경제전망 : IMF 7.5%, ADB 7.4%, World Bank 7.6%,

- 2015/16 회계연도중 서비스 수출 1,551억 달러, 수입 857억 달러, 무역수지 694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서비스 수출 호조가 인도경제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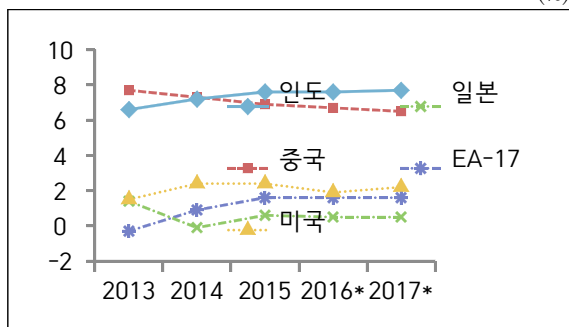
- 2015년중 인도의 내수성장률은 7.3%에 달했으며, 2017년에는 내수*성장률이 중국(6.6%)보다 높은 7.7%로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OECD)

* 내수는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

- 인도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도 두자리 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5년에는 393억달러(36.6%), 2016년 1분기에는 106억달러(6.8%)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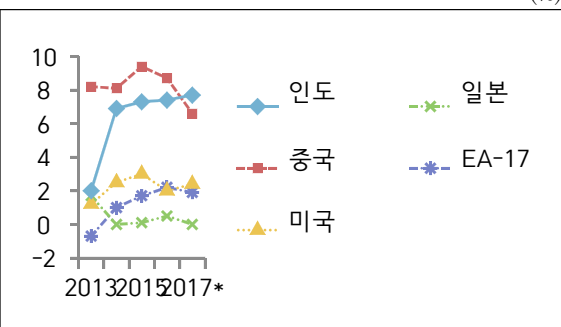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



<세계 주요국 내수성장률>

(%)



주 : 2016~2017년은 추정치. EA-17은 유로존 19개국중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를 제외한 17개국
 자료 : World Bank, OECD

2. 한·인도 CEPA 개요

■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거대 신흥국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체결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임

<한·인도 CEPA 추진 연혁>

일자	주요내용
2003.12.	한·인도 연구그룹 설치 합의
2004.5.	단기 FTA 추진국 확정
2005.1.~2006.1.	제1~5차 공동연구 회의
2006.3.~2008.9.	제1~12차 공식협상
2008.9.	실질적 타결
2009.8.7.	공식서명
2010.1.1.	발효

<인도의 발효 FTA 현황>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스리랑카 FTA	2000.3.1. 발효
SAFTA	2006.1.1. 상품협정 발효
싱가포르 CECA	2005.8.1. 발효 2008.2.2. 개정 발효
부탄 FTA	2006.7.29. 상품협정 발효
ASEAN FTA	2010.1.1. 상품협정 발효 2015.7.1.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한국 CEPA	2010.1.1. 발효
일본 CEPA	2011.8.1. 발효
말련 CECA	2011.7.1. 발효

자료 : fta.go.kr, 언론보도 종합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2016.3.)

■ 한·인도 CEPA 상품양허는 여타 FTA에 비해서는 양허수준이 낮으나, 당시 인도측으로는 개방 수준이 높은 편이었음

- 2016년 말까지 CEPA 8년차를 앞두고 모든 관세 철폐·인하 일정이 완료
 - 한국은 품목수(HS10단위) 기준 93.2%, 수입액기준 89.7%가 관세철폐·인하
 - 인도는 품목수(HS8단위) 기준 83.6%, 수입액기준 85.5%가 관세철폐·인하

<한·인도 CEPA 양국 양허수준>

(개, 백만달러, %)

양허단계	한국측 양허				인도측 양허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10단위	비중	금액	비중	8단위	비중	금액	비중
관세철폐	9,984	88.7	1,679	84.8	8,156	69.6	2,984	74.6
E-0	6,824	60.6	1,248	63.0	460	3.9	1,538	38.4
E-5	2,310	20.5	205	10.3	448	3.8	560	14.0
E-8	850	7.5	226	11.4	7,248	61.9	886	22.1
RED	34	0.3	3	0.2	941	8.0	342	8.5
SEN	478	4.2	94	4.7	704	6.0	96	2.4
EXC	765	6.8	205	10.3	1,895	16.2	580	14.5
협상제외	0	0	0	0	14	0.1	N/A	N/A
전체합계	11,261	100	1,981	100	11,710	100	4,002	100

주 : E-0(즉시 철폐), E-5(5년차 철폐), E-8(8년차 철폐), RED(8년차 1~5% 잔존), SEN(8년차 50% 잔존), EXC(양허제외)

자료 : 외교통상부(2009) 및 한·인도 CEPA 부속서 인도측 양허표를 기초로 저자 재작성

3. 한 · 인도 CEPA 평가

(1) 실질 관세율 인하

※ 한 · 인도 CEPA 수혜품목의 한 · 일 · 중 비교를 위해 무역협회 K-stat 인도 무역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본 보고서 3장의 對인도 수출통계는 인도의 對한국 수입통계를 의미

■ 인도의 對한국 실질 수입관세율은 3.3%로 일본의 3.8%, CEPA 미체결국인 중국의 7.3%에 비해 낮은 수준

● 인도의 對한국 실질 수입관세율은 2009년 CEPA 발효 전 9.9%에서 2016년에는 3.3%로 6.6%p 인하되었으며 일본의 3.8%를 소폭 하회

– 현재 인도시장 개방속도*는 한국이 우위이나, 개방폭**은 일본이 우위에 있어 장기적으로 일본의 실질관세율이 한국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

* 개방속도(수입액기준, %) : 〈한 · 인도〉 즉시철폐 38.4, 4년철폐 14.0, 7년철폐 22.1
〈일 · 인도〉 즉시철폐 7.7, 5년철폐 10.0, 7년철폐 0.1, 10년철폐 72.0

** 개방 폭 (수입액기준, %) : 한 · 인도 CEPA : 85.5, 일 · 인도 CEPA : 90.0

● 중국은 인도와 CEPA 미체결국으로, 2009년 이후 7년간 실질관세율 하락폭이 3%p에 그쳐 2016년 실질관세율은 한국, 일본보다 높은 7.3%

<인도의 對 한 · 중 · 일 실질 수입관세율 비교>

(개, 억달러, %)

	한국		일본		중국	
	2009	2016	2009	2016	2009	2016
실제 수입품목수	3,284	3,397	3,734	4,027	6,686	7,125
– 무관세 품목	(103)	(438)	(120)	(503)	(157)	(176)
– 관세품목	(3,181)	(2,959)	(3,614)	(3,524)	(6,529)	(6,949)
실제 수입액	73	131	59	96	250	615
– 무관세품목	(1)	(46)	(3)	(23)	(28)	(162)
– 관세품목	(72)	(85)	(56)	(73)	(221)	(454)
실제 수입품목 평균관세율	11.8	6.8	12.4	6.3	12.5	11.1
실질 관세율	9.9	3.3	11	3.8	10.2	7.3

주 : 1) 실제 수입품목수 및 수입액은 2015년 기준

2) 2009년 평균관세율은 한 · 인도 CEPA 기준세율, 2016년 한국 2016.1.1, 일본 2016.4.1, 관세율을 기준

3) 실질관세율은 품목별 관세율을 수입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자료 : 관세청, 한 · 인도 CEPA 양허표 인도재정부,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 수혜품목 수출성과 제고

■ 한·인도 CEPA 발효 후 6년간 수혜품목의 對인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8.6%로 비수혜품목 성장율 6.8%을 1.8%p 상회

- (수혜품목) 수혜품목 수출은 2010년 67억 달러에서 2012년 138억 달러로 확대된 후 2015년 95억 달러로 주춤한 상황이며 연평균 8.6% 증가
- (비수혜품목) 2010년 29억 달러에서 2015년 36억 달러로 연평균 6.8% 증가

<CEPA 수혜/비수혜¹⁾ 품목 對인도 수출 (인도의 對한국 수입)>

구분	2010년 (1년차)	2011년 (2년차)	2012년 (3년차)	2013년 (4년차)	2014년 (5년차)	2015년 (6년차)		'10~'15 성장율
						수출액	비중	
수혜	67(16.6)	94(40.0)	138(45.5)	94(-31.6)	112(18.8)	95(-14.8)	72.8	8.6
비수혜	29(18.4)	31(8.9)	38(21.8)	31(-17.5)	35(12.7)	36(1.4)	27.2	6.8
전체	96(17.1)	126(30.8)	175(39.7)	125(-28.6)	147(17.3)	131(-10.9)	100.0	8.1

주 : 1) 수혜품목 : CEPA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단계별로 인하되는 품목

비수혜품목 : 기존 무관세(0%) 품목, 양허제외 품목, 기타 품목

2)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계산

■ 동 기간 수혜품목의 인도의 對세계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5.1%로 우리나라의 對인도 연평균 수출증가율 8.6%을 3.5%p 하회

- 2010~2015년 6년간 수혜/비수혜품목의 인도의 對세계 수입 연평균 성장율은 각 5.1%, 11.7%이나, 동 품목의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 연평균 성장율은 각 8.6%, 6.8%로 CEPA 특혜효과가 나타남
- 동 기간 일본의 對인도 수혜/비수혜품목 수출 연평균 성장률은 6.3%, 6.6%로 비수혜품목 성장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수혜품목의 성장률은 2.3%p 하회

<한·일·중 CEPA 수혜/비수혜 품목 對인도 수출(인도의 수입) 증감율>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한국	67 (16.6)	29 (18.4)	96 (17.1)	94 (40.0)	31 (8.9)	126 (30.8)	138 (45.5)	38 (21.8)	175 (39.7)	94 (-31.6)	31 (-17.5)	125 (-28.6)	112 (18.8)	35 (12.7)	147 (17.3)	95 (-14.8)	36 (1.4)	131 (-10.9)
일본	61 (18.3)	17 (14.5)	78 (17.4)	88 (43.2)	25 (49.8)	113 (44.6)	121 (37.6)	28 (12.3)	149 (32.1)	85 (-29.4)	20 (-27.9)	105 (-29.1)	85 (-0.6)	23 (12.6)	107 (1.9)	75 (-11.5)	21 (-6.4)	96 (-10.5)
중국	257 (26.9)	155 (21.5)	412 (24.8)	331 (28.9)	175 (13.0)	506 (22.9)	380 (14.9)	210 (19.9)	590 (16.6)	310 (-18.5)	209 (-0.4)	519 (-12.1)	388 (25.0)	246 (17.8)	634 (22.1)	367 (-5.3)	248 (0.9)	615 (-2.9)
전세계	2,747 (26.2)	531 (19.4)	3,278 (25.0)	3,072 (11.8)	668 (25.9)	3,740 (14.1)	4,270 (39.0)	805 (20.4)	5,075 (35.7)	3,686 (-13.7)	728 (-9.6)	4,414 (-13.0)	3,831 (3.9)	909 (24.8)	4,739 (7.4)	2,931 (-23.5)	864 (-4.9)	3,796 (-19.9)

주 : 한·인도 CEPA 수혜·비수혜 품목 분류를 타국에게 동일 적용,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우리나라 인도시장 점유율은 2015년에 3.45%로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최고치를 기록

- CEPA 발효 전(2009년)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3.13%이나 2015년 점유율은 0.32%p 상승한 3.45%를 기록
- 한·일간 시장점유율 격차는 발효 전(2009년) 0.6%p에서 2015년 0.92%p로 0.32%p 확대

<주요 국가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p)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a)	3.13	2.93	3.36	3.45	2.84	3.10	3.45
일본(b)	2.53	2.38	3.01	2.93	2.39	2.27	2.53
중국(c)	12.58	12.56	13.53	11.63	11.76	13.37	16.21
미국	5.80	5.29	5.16	5.47	4.35	4.78	5.39
한·일 격차(a-b)	0.60	0.55	0.34	0.52	0.45	0.83	0.92
한·중 격차(c-a)	9.45	9.63	10.17	8.18	8.92	10.27	12.7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3) CEPA 발효효과 확대 한계

■ 일·인도 CEPA 발효, 중국 저가제품 유입 확대로 한·일·중의 인도 시장내 수출경합도가 모두 상승함에 따라 수출경쟁이 심화

- (한·일) 수출경합도가 0.38 (2012년) → 0.42 (2015년)으로 0.04 상승
 - 수송기기(0.81), 정밀기계(0.49), 가공1차산품(0.45), 전기기계(0.43)에서 높은 수출 경합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가공1차산품, 고무화학, 기타 수송기기에서 경합이 상승
 - * 경합상승('12년 → '15년) : 가공1차산품(0.34 → 0.45), 고무화학(0.27 → 0.33), 기타수송기기(0.29 → 0.37)
- (한·중) 수출경합도가 0.24 (2012년) → 0.29 (2015년)으로 0.05 상승
 - 수송기기(0.61), 전기기계(0.51), 정밀기계(0.47)순으로 수출경합도가 높으며 최근 비금속제품, 수송기기, 종이제품을 중심으로 경합도가 상승
 - * 경합상승('12년 → '15년) : 비금속제품(0.14 → 0.34), 수송기기(0.49 → 0.61), 종이제품(0.24 → 0.31)

<한·인도 CEPA 수혜품목의 한·일, 한·중간 수출경합도>

품목명	한·일 경합도			한·중 경합도		
	2012년(a)	2015년(b)	차(b-a)	2012년(c)	2015년(d)	차(d-c)
가공 1차 상품	0.34	0.45	0.11	0.37	0.17	-0.19
가공광물	0.20	0.26	0.06	0.05	0.12	0.07
고무화학	0.27	0.33	0.07	0.15	0.18	0.03
기타 운송기기	0.29	0.37	0.08	0.04	0.10	0.06
기타 제조품	0.34	0.37	0.02	0.31	0.32	0.01
비금속 제품	0.23	0.16	-0.06	0.14	0.34	0.20
섬유류	0.08	0.11	0.02	0.21	0.26	0.05
수송기기	0.78	0.81	0.03	0.49	0.61	0.12
전기기계	0.43	0.43	0.01	0.46	0.51	0.05
정밀기계	0.47	0.49	0.02	0.44	0.47	0.03
종이제품	0.24	0.14	-0.10	0.24	0.31	0.07
전 체	0.38	0.42	0.04	0.24	0.29	0.05

주 : 1) HS 6단위 기준, 미분류 품목 제외

2) 수출경합도 지수(ESI : Export Similarity Index) = $i \sum [\min(X_{ij}, X_{ik})]$ 단, X_{ij} , X_{ik} 는 국가 j, k의 총수출 중 i 상품의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석유화학, 철강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한·인도 CEPA 수혜품목의 단가 하락 및 對인도 수출액 감소

- 세계적 공급과잉에 따른 국제원자재 단가 하락으로 기유(-38.7%), 평판압연제품(-34.0%), 기타 철강제품(-16.5%)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혜품목 수출이 감소

* 국제유가 (평균, \$/bbl) : 105.25('13년) → 96.56('14년) → 50.69('15년)

* 국제철강가격(중국수출가격, \$/MT) : 후판 537('13년) → 497('14년) → 331('15년)

열연 543('13년) → 502('14년) → 329('15년)

냉연 616('13년) → 579('14년) → 379('15년)

<한·인도 CEPA 수혜품목중 인도의 주요 수입감소 품목>

(백만달러, %)

HS	품목명	對세계		對한국			한국점유율	
		수입액 2015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7101960	기유(base oil) ¹⁾	1,039	-38.7	910	488	-46.4	53.7	46.9
87089900	기타 자동차 부분품	1,646	-10.7	329	292	-11.3	17.9	17.8
71069100	가공하지 아니한 은	3,929	-11.5	302	222	-26.5	6.8	5.7
72091790	철·비합금강 평판압연 (0.5~1mm)	247	-34.0	305	175	-42.5	81.5	71.0
48010090	신문용지	766	-13.6	191	157	-17.6	21.5	20.5
29173600	고순도 테레프탈산	624	-42.7	538	138	-74.4	49.4	22.1
40021990	기타 합성고무 제품	213	-50.7	236	121	-48.8	54.7	56.9
72104900	기타 철강제품	231	-16.5	148	118	-20.2	53.8	51.4
39013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237	-17.7	207	116	-43.9	72.0	49.1

주 : 기유는 원유에서 증류하여 분리·정제된 액체석유로 운할유, 그리스의 주원료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 한·인도 CEPA 활용률 수준이 기 체결한 타 FTA 활용률에 비해 낮음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결합기준 품목이 전체의 74%에 달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他 FTA의 결합기준 품목 비중(%) : 한·미 1.4, 한·EU 3.6, 한·페루 0.0
- 한·인도 CEPA 수출활용률은 62.4%로 기체결 FTA 중 아세안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임

<한국의 협정 국가별 FTA 활용률>

(%)

연도	EU	페루	칠레	EFTA	터키	미국	인도	ASEAN
2015년 하반기	85.3	83.6	80.7	80.4	79.1	79.1	62.4	42.5

자료 : 한국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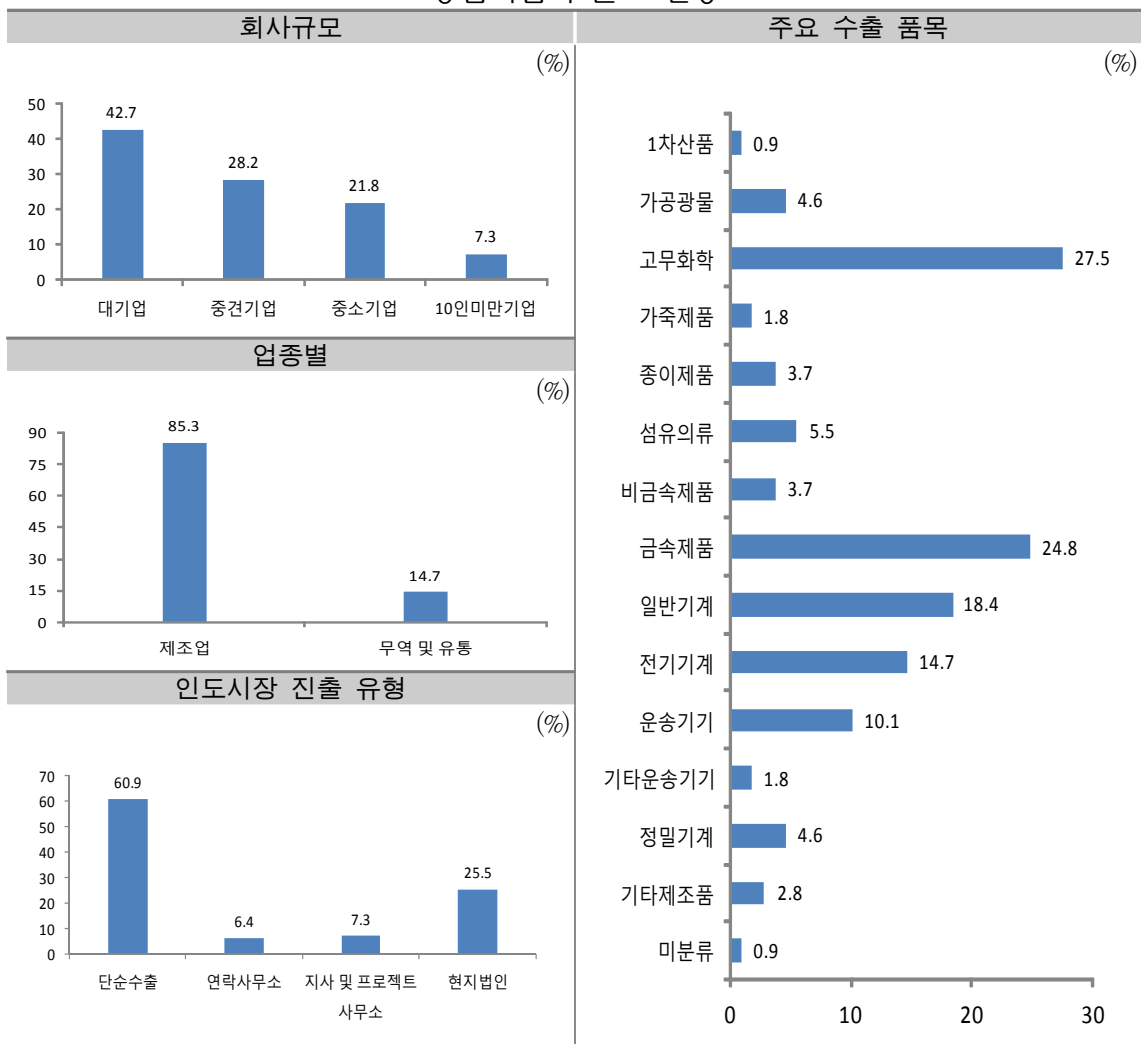
Ⅲ. 한·인도 CEPA에 대한 무역업계 설문조사

1. 조사개요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 2015년 對인도 수출실적 1만 달러 이상 기업
2. 조사기간 : 2016년 5. 19 ~ 6. 13
3. 조사방법 : e-mail (Web 설문)
5. 응답기업 : 111개사
6. 조사내용 : 한·인도 CEPA 활용현황, 애로사항, 원산지검증, 개선과제

<응답기업의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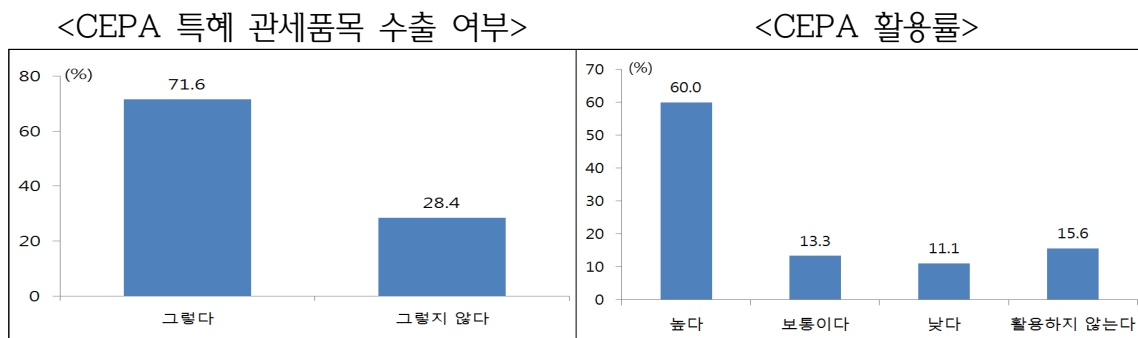


2. 분야별 응답결과

(1) 수혜품목 수출 및 CEPA 활용 여부

■ 응답기업의 71.6%가 CEPA 특혜관세 적용 품목을 수출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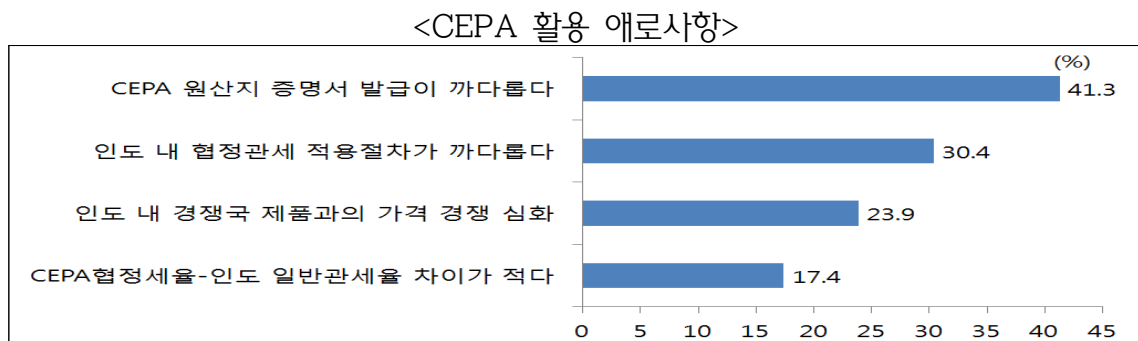
- CEPA 활용률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60.0%, 보통 13.3%, 낮다 11.1%였으며,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기업도 15.6%에 달함



(2) CEPA 활용 애로사항

■ CEPA 활용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도내 CEPA 협정관세 적용 어려움」, 「CEPA 체감효과가 낮음」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응답이 41.3%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도 내 CEPA 협정관세 적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0.4%로 2위를 차지
- 경쟁국과의 가격경쟁으로 CEPA 체감효과가 낮다는 응답이 23.9%로 3위를 차지했으며, CEPA 협정관세율과 일반관세율 차이가 적어 활용률이 낮다는 응답도 17.4%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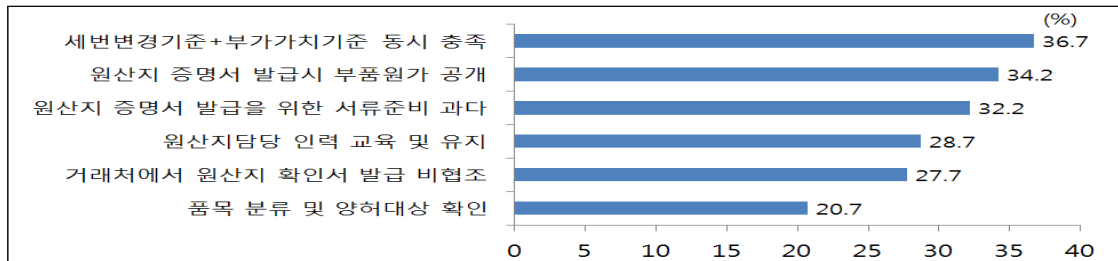


주 : 복수응답 포함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애로와 관련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역내산 부가가치기준 동시충족(결합기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부품원가 공개, 준비서류 과다 등이 그 뒤를 이음

- 결합기준 충족 애로가 36.7%로 1위, 부품원가 공개 부담이 34.2%로 2위, 서류준비 과다가 32.2%로 3위를 차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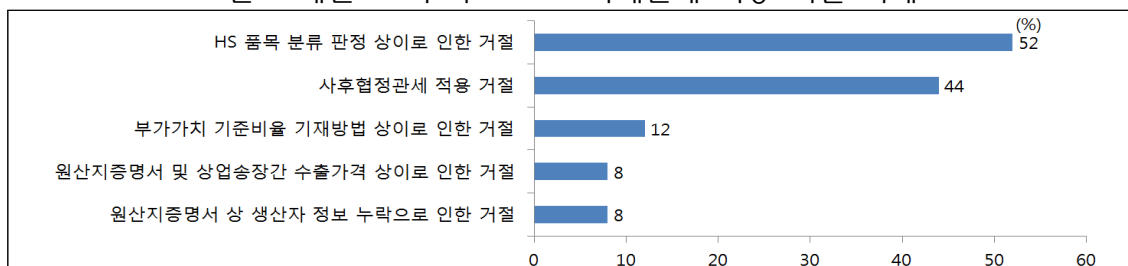


주 : 복수응답 포함

■ 응답기업의 22.5%가 인도세관으로부터 CEPA 협정관세 적용 거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협정관세 적용 거절 사유로는 품목분류 판정 상이(52.0%), 사후 협정관세 적용 거절¹⁾(44.0%)이 가장 많았음
- 기타 소수 사례로는 부가가치 기준비율 기재방법 상이²⁾, 3자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상업송장 간 수출가격 상이³⁾, 생산자정보 누락⁴⁾ 등으로 인한 협정관세 거절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인도 세관으로부터 CEPA 특혜관세 적용 거절 사례>



주 : 복수응답포함

- 1) 한·인도 CEPA 협정문상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행이 가능하며, 협정관세 적용 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후 1년 이내에 사후협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됨
- 2) 원산지결정 역내부가가치 35%이상 충족 기준의 경우, 실제 부가가치율이 60%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에 우리나라는 기준비율인 35%, 인도는 실측비율인 60% 기재
- 3) 중계무역 등 3국무역의 경우,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상의 가격은 1차 수출가격에 일정마진이 포함되어 생산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수출가격과 상이
- 4) 한·인도 CEPA 원산지 증명서 상의 생산자정보 기재 란은 선택 기재사항임

【협정관세 적용 거절 사례】

① HS코드 품목분류 판정상으로 인한 거절

〈사례 1〉

- CEPA 협정관세 적용 품목인 흡기관 압력센서(HS 9026.20, 관세율 0%)를 수출하는 A사는 이전까지 무관세로 인도에 수출을 해오다, 최근 인도세관으로부터 동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거절당함
- 인도세관은 해당 품목을 자동차 부분품(HS 8708.99)로 재판정하고 5.94%의 관세를 부과한 것임. A사는 인도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개시하였으나 최종 판결에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판결 전까지 고관세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

〈사례 2〉

- CEPA 협정관세 적용 품목인 통신용 부분품(HS 8517.90, 관세율 0%)을 수출하는 B사는 이전까지 무관세로 인도에 수출을 해오다 최근 인도세관으로부터 동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거절당함
- 인도세관은 동 품목을 동축 케이블(HS 85442.20)로 판정하고 5.94%의 관세를 부과

② 사후 협정관세 적용 거절

〈사례 1〉

- CEPA 협정관세 적용 품목인 금속가공기계를 수출하는 국내 C사는 인도 D 수입 업체에게 동 품목을 선 수출 후, 7일 이내 CEP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업체에 송부
- D 수입업체는 과거 인도세관을 상대로 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대부분 거절 당했음을 이유로 인도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대신 수출대금에서 해당 관세 납부금을 제외한 차액을 수입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C사에 통보

〈사례 2〉

- CEPA 협정관세 적용 품목인 프레스 머신을 수입하는 인도 현지 법인 E사는 국내 업체로부터 일반경로로 당해 품목을 수입
- 수입 신고 후 7일 이내에 CEP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송부받아 관련 서류를 인도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인도세관은 협정관세 적용을 거절

■ 반면 인도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나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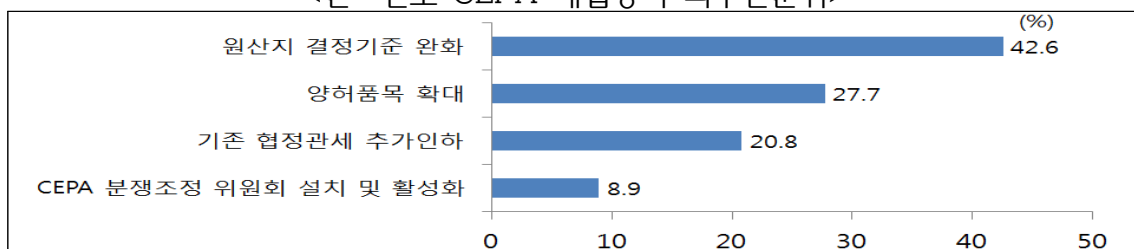
- 인도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받았다는 응답기업이 2개사(1.8%)에 불과하여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음
-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기업들도 모두 관련서류 제출 후 회신기간 6개월 이내에 ‘원산지 이상 없음’으로 판정 받음

(3) CEPA 개선협상 과제

■ 한·인도 CEPA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양허품목 확대, 기존 협정관세 추가 인하 순으로 응답함

- 수출기업들은 원산지결정 기준인 ‘결합기준’의 적용 완화를 개선협상 최우선 과제로 지적
- 또한 가격경쟁력 개선을 위한 양허품목 확대 응답이 27.7%에 달했으며, 기존 협정세율의 추가인하 응답도 20.8%에 달함
- 이외 분쟁해결 창구설립, 인도의 사후 협정관세 적용거부 관행 해결, 서류 간소화, 일본과 동등한 양허적용 등의 응답이 있었음

<한·인도 CEPA 재협상시 최우선순위>



주 : 1순위 기준

【※ CEPA 양허확대 요청 사례】

- 한·인도 CEPA 양허제외 품목인 차량·건축용 소재인 PVB(HS 3920.91, 관세율 10%)를 인도에 수출하는 E사는, 경쟁사인 태국 제품이 당해 품목에 대해 5%의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아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현지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음
- E사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시 동 품목에 대한 양허조건 개선을 요청

IV. 한·인도 CEPA 분야별 개선 과제

1. 상품양허분야

※ 對인도 상품수출 확대를 위해 한·인도 CEPA 관세잔존(양허제외 및 관세인하) 품목 중 양허개선이 필요한 200개 품목을 선정

(1) 인도 수입수요 확대에 따른 양허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137개)

■ 인도 수입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세잔존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을 추진할 필요 있음

- 2016년말을 기점으로 한·인도 양국 CEPA 관세철폐 대상 품목들의 관세 철폐가 완료될 예정

* (한국측) HS 2002 10단위 기준 88.7%(9,984개 품목)의 관세철폐가 완료

* (인도측) HS 2002 8단위 기준 69.6%(8,156개 품목)의 관세철폐가 완료

-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 상품양허 수준을 고려하여 한·인도 CEPA의 개방 수준을 확대해야 함

* 他 FTA 개방폭(품목수 기준): 미/EU/호주/페루 100%, 캐나다 98%, 터키 91% 등

■ 우선 한·인도 CEPA 관세가 잔존하는 품목중 인도 내 수입수요가 크고 對한국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양허개선 추진 필요

- 양허개선 대상품목은 석유화학, 수송기계, 기초산업기계, 비철금속제품 등 137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에서 인도의 對세계 수입은 123.3억 달러, 對한국 수입은 15.7억 달러 규모임

－ 상기 품목은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수입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인도의 수입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양허수준 개선 시 한국의 수출 및 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 주요 한·인도 CEPA 양허개선 필요 품목

- (석유화학) 테레프탈산과 그 염(SEN), 아크릴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EXC), 페놀(EXC) 등 부분감축 및 양허제외 품목
- (수송기계) 기어박스(EXC), 클러치(EXC), 에어백(RED) 등 자동차 부분품
- (기초산업기계) 열교환기(SEN), 진공펌프(RED), 냉장, 냉동설비용 압축기(EXC) 등 부분감축 및 양허제외 품목
- (비철금속) 구리선(EXC), 알루미늄 판·시트·스트립(EXC), 정제한 동선(EXC) 등 양허제외 품목

<한·인도 CEPA 양허개선 필요 품목(세부품목 붙임 1. 참고)>

(개, 백만달러)

품목명	품목수	인도의 수입			품목명	품목수	인도의 수입		
		對세계	對한국	점유율			對세계	對한국	점유율
석유화학제품	19	2,543	705	(27.7)	철강제품	4	357	17	(4.7)
수송기계	20	2,101	357	(17.0)	직물	4	343	12	(3.4)
기초산업기계	12	1,614	131	(8.1)	가정용전자제품	4	221	27	(12.2)
비철금속제품	3	806	12	(1.5)	섬유사	2	127	5	(4.0)
광물성연료	2	656	26	(3.9)	산업용전자제품	1	103	15	(14.9)
플라스틱제품	20	639	45	(7.0)	농산물	1	94	1	(0.6)
기계요소공구및금형	6	569	56	(9.9)	요업제품	3	61	5	(8.7)
정밀화학제품	8	558	49	(8.7)	섬유제품	1	44	3	(7.4)
산업기계	10	538	31	(5.7)	전자부품	2	43	8	(19.2)
중전기	7	489	25	(5.1)	마찰및연마제품	1	32	1	(2.9)
고무제품	6	372	30	(8.1)	기타철강금속제품	1	30	4	(12.7)
					총합계	137	12,338	1,565	(12.7)

주 : 1) 수입액 2015년 기준

2) 인도의 HS6단위 통계를 한국의 MTI 2단위로 연계하여 재분류

자료 : 한·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 양허개선 필요 품목 선정 기준

- ① 관세잔존, 양허·협상제외 품목 중
- ② 인도 對세계 수입 1천만 달러 이상('12~'15년 평균)
- ③ 인도의 對세계 연평균 수입 증가율 10% 이상('10~'15년)
- ④ 對한국 수입 50만 달러 이상('12~'15년 평균)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

(2) 일·인도 CEPA 대비 양허열위 품목 (63개)

■ 인도가 체결한 FTA 중 한·인도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에 대한 비교우위 확보가 필요함

- 2000년 이후 인도는 동시 다발적으로 FTA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과 총 14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

■ 인도 시장에서 수출경합도가 높은 일본이 인도와 체결한 일·인도 CEPA 양허수준이 한·인도 CEPA 양허수준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

- 인도의 관세 철폐·인하 비중 (수입액기준) : 對한국 85.5%, 對일본 90.0%
- 일·인도 CEPA 양허에 따른 인도측 시장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한·인도 CEPA의 선점효과가 감소하여 추가 개방을 통한 한·인도 CEPA의 비교열위 해소가 필요

<한·인도 CEPA 및 일·인도 CEPA 양허 비교 (금액 기준)>

구분	양 허 일 정						
인도→한	E-0	E-5	E-8	RED	SEN	소계	양허제외
	38.4%	14.0%	22.1%	8.5%	2.4%	85.5%	14.5%
인도→일	A	B5	B7	B10		소계	양허제외
	7.6%	10.0%	0.1%	72.0%		90.0%	10.0%

주 : 1) E-0(즉시 철폐), E-5(5년차 철폐), E-8(8년차 철폐), RED(8년차 1~5% 잔존), SEN(8년차 50% 잔존)

2) A(즉시 철폐), B5(6년차 철폐), B7(8년차 철폐), B10(11년차 철폐)

자료 : 일·인도 CEPA 체결이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09)

- 일·인도 CEPA 대비 양허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석유화학, 철강, 중전기 등 총 63개로 동 품목의 2015년 對한국 수입은 22.5억 달러
- 일·인도 CEPA 대비 주요 양허개선 필요 품목
 - － (석유화학) 염화비닐수지(EXC), 폴리에테르(EXC), 아크릴 중합체(EXC), 에틸렌 중합체(EXC) 등 양허제외 품목
 - － (전자부품)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RED), 집적회로(RED), 메모리(RED) 등 부분 감축 품목

- (철강제품) 평판압연제품(RED), 스테인레스강제 평판압연제품, 웨이스트와 스크랩(RED), 철강제관(SEN) 등 부분감축 품목

- 상기 품목중 전력 프로젝트용 기계,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등은 對일본 수입이 對한국 수입을 상회하고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양허개선이 시급

* 주요 품목별 수입액 (2015년, 백만 달러) :

전력 프로젝트용 기계	對韓 139 < 對日 162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對韓 36 < 對日 45
기타 프로젝트용 기계	對韓 15 < 對日 45
산업 플랜트 프로젝트용 기계	對韓 20 < 對日 27
공기조절기 부분품	對韓 23 < 對日 33
배전 제어용 보드	對韓 5 < 對日 39
볼 베어링	對韓 6 < 對日 17

<일·인도 CEPA 대비 양허 열위품목 (세부품목 붙임2. 참고)>

(개, 백만달러)

품목명	품목수	인도의 수입			품목명	품목수	인도의 수입		
		對세계	對한국	對일본			對세계	對한국	對일본
석유화학제품	18	5,452	625	30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3	258	66	24
기타잡제품 (프로젝트용 설비)	3	2,766	174	255	가정용전자제품	3	228	52	0.5
전자부품	3	1,499	244	79	정밀화학제품	2	154	28	16
철강제품	7	1,435	214	66	섬유사	2	122	24	2
중전기	4	1,245	66	91	수송기계	2	114	38	5
산업용전자제품	2	1,237	17	2	섬유원료	1	114	9	0.3
광물성연료	2	1,110	495	7	섬유제품	1	113	26	1
전선	4	454	117	14	직물	1	97	9	1
기초산업기계	2	410	32	41	기타철강금속제품	1	40	8	2
산업기계	2	261	12	17	총합계	63	17,110	2,254	932

주 : 1) 수입액 2015년 기준

2) 인도의 HS6단위 통계를 한국의 MTI 2단위로 연계하여 재분류

자료 : 한·인도 CEPA 양허표, 일·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 일·인도 CEPA 대비 양허 열위품목선정 기준

- ① 우리나라 對인도 수출 상위 350대 품목 중
- ② 한·일 양국의 對인도 CEPA 2016년 세율, 양허 종료연도 세율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세율이 높은 품목을 선정

2. 원산지 결정기준 분야

■ 양국 기업의 CEPA 활용 최대 애로인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결합기준)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인도 CEPA에 비해 불리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우선적으로 개선
 - 일·인도 CEPA는 대다수 품목들이 6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단일기준)이나 한·인도 CEPA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결합기준 품목이 많아 일본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

<일·인도 CEPA 대비 원산지결정기준 열위품목(세부품목 불임3. 참고)>

(개)

품목	품목수	한국	일본	품목	품목수	한국	일본
정밀화학제품	214	4단위,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기초산업기계	7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6단위+ 부가가치
플라스틱제품	172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수송기계	6	4단위+ 부가가치,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4단위+ 부가가치
비철금속제품	130	4단위,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기타생활용품	5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철강제품	123	4단위,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문구	5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83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6단위+ 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5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신변잡화	73	4단위+ 부가가치, 6단위+ 부가가치	4단위, 6단위	섬유사	2	4단위+ 부가가치	6단위
기타화학 공업제품	40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수산물	2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기타철강 금속제품	29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전자부품	2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농산물	28	4단위+ 부가가치, 6단위+ 부가가치	4단위, 6단위	가구	1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섬유제품	12	6단위+ 부가가치	4단위, 6단위	기타기계류	1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식탁용구	11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산업기계	1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공예품	9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요업제품	1	6단위+ 부가가치	6단위

주 : 1) 인도의 HS6단위 통계를 한국의 MTI 2단위로 연계하여 재분류

2) 4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부가가치기준 00%이상 충족)

3) 품목수는 최종단위 기준

자료 : 한·인도 CEPA 협정문, 일·인도 CEPA 협정문

- 원산지 결정기준 중 ‘결합기준’적용범위를 축소하고 ‘단일기준’, ‘선택기준’ 혹은 ‘이중기준’등 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을 확대
 - (단일기준)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중 택 1
 - *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원산지 입증 부담이 크고 원가공개 등 기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어 적용 최소화 필요
 - (선택기준) 수출자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 (이중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을 우선기준과 보완기준으로 구분하여 우선기준으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보완기준을 2차로 적용

3. 무역원활화 및 관세행정 협력

■ 한·인도 CEPA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행 양허표의 개정과 함께 협정규범의 엄정한 준수를 합의해야 함

- (개정 HS Code 반영) HS2002 기준으로 작성된 한·인도 CEPA 양허표를 개선협상시 HS2012 또는 새로운 HS2017 기준으로 개정
 - 현재 수출입 신고는 HS 2012 기준으로 진행하나, 원산지 판정은 HS 2002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산지 서류작성의 불편함과 함께 원산지 판정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HS2002 기준으로 양허조건이 상이한 2개 품목이 HS2012에서는 1개 단일품목으로 통합되면서 양허세율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
 - * <사례> HS 2012 기준 자동차용 소음기·배기관(HS 87089200) 품목은 HS 2002 기준으로 소음기·배기관(HS 87089200,EXC), 기태(HS 87099900,RED) 등 2개의 상이한 양허조건을 가진 품목이 통합된 것임
- (규범준수 촉구) 협정문에 기재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인도 측의 보다 엄정한 이행을 촉구해야 함
 - 사후협정관세 신청을 인도측 세관에서 거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양국 협정에 입각한 인도측 세관 행정 개선을 요청하고, 필요시 ‘CEPA 적용 규정집’ 제작 및 배포 등 추가적인 조치가 요망됨

■ CEP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세관당국 간 협력창구 운영

- CEPA 협정문에 규정된 양국 관세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원산지 규정, 절차, 관세 등의 분야에 대한 양국간 행정협력을 지속 추진
 - 관세위원회 운영 및 개최를 정례화 하여 양국 기업이 CEPA 적용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 등 양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 한·인도 CEPA 협정문 제5.10조 관세위원회
1. 양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관세 관련 사항을 다루는 관세위원회를 설립하는데 합의한다.
 - 가. 제3장(원산지 규정)·제4장(원산지 절차) 이 장 및 통일규칙의 통일적 해석·적용 및 운영
 - 나. 원산지 결정에 관한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처리
 2. 관세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화합하고 그 이후에는 요구에 따라 그리고 최소 매년 1회 대한민국과 인도에서 번갈아 회합한다.
- 인도측 세관이 국제 표준의 선진적인 통관기법 및 절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측 세관 공무원을 국내 초청하여 통관 및 원산지증명관련 연수, 워크숍 개최 등을 검토

■ 통관 관련 애로 접수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필요

- 한·인도 CEPA 협정문 14장에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및 중재과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기업들은 애로상황의 외부노출, 관세당국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됨
- 기업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분쟁해결 및 중재가 가능한 분쟁해결 전담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지난 6월 對인도 투자 기업대상 정보제공, 애로해결 등을 위해 개소한 ‘코리아 플러스 센터’에 CEPA 관련 애로청취 및 분쟁해결 권한 일부 위임도 검토

V. 결론 및 시사점

- 지난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는 한국의 對인도 수출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나 낮은 개방수준,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가 축소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한·인도 CEPA 수혜품목 수출의 연간누적성장율은 8.6%로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2015년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3.45%를 기록하여 발효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인도시장에서 경쟁국과의 수출경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일·인도 CEPA 발효로特惠세율 선점효과가 축소되고 있으며,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CEPA 활용률이 높지 않은 상태임
- 국내 수출기업은 한·인도 CEPA 개선 과제로 원산지기준 완화, 양허품목 확대, 기존 협정관세율 추가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
 - 수출기업 설문결과 까다로운 원산증명서 발급(1위), 까다로운 협정관세 적용 절차(2위), 낮은 CEPA 관세효과(3위)를 한·인도 CEPA 애로로 응답
 - 설문 응답기업의 약 1/4이 인도에서의 협정세율 적용 거절을 경험하여 원산지 증명 및 판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청
 - 한·인도 CEPA 개선을 위해서는 원산지기준 완화(1위), 양허품목 확대(2위), 기존 협정세율 추가인하(3위)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한·인도 CEPA 개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양허품목 및 수준 확대 ②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③ 무역원활화 및 관세행정 협력을 중심으로 협정 개선이 필요
 - 관세잔존 품목중 인도 수입수요 확대에 따른 양허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일·인도 CEPA 대비 양허열위에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개선협상이 필요

■ 對인도 상품수출 확대를 위해 양허개선이 필요한 200개 품목(인도 HS8단위 기준)을 추출한 결과 석유화학,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계, 철강금속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양허개선 품목을 인도의 수입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 137개와 일인도 CEPA 대비 열위품목 63개로 구분하여 추출

* 인도 수요증가 품목(개) : 기계 28, 석유화학 51, 수송기계 20, 전기전자 14, 철강금속 8

* 일본 대비 열위품목(개) : 기계 7, 석유화학 20, 수송기계 2, 전기전자 16, 철강금속 8

■ 한·인도 CEPA 양허표 개정, 엄격한 원산지 결합기준 적용 축소, 정부간 협력채널인 관세위원회 운영 내실화, 수출기업의 분쟁해결을 위한 전담창구 설치도 적극 추진해야 함

- 현지 수출입신고는 HS2012 기준이나 원산지판정은 HS2002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산지판정의 모호성 해소 및 수출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양허표 개정이 필요
- 일·인도 간에는 세번변경 단일기준이 많은 반면, 한·인도는 결합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이 많아 일본과 동등한 수준으로의 원산지기준 개선이 필요
- 품목분류, 원산지증명 등의 애로해소를 위해 관세위원회 운영내실화와 규정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며, 분쟁해결을 위한 상설기구나 전담창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모디정부의 주요 경제개발 정책 추진으로 한국의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양허조건 개선 노력이 필요

- Make in India(제조업 육성), Smart City(도시 및 인프라개발), Digital India(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인도의 경제개발 추진으로 한국의 주력 제조업은 물론 환경산업 분야에서 對인도 수출이 유망할 전망

- Smart City정책으로 건설장비, 전기발전, LED 등의 수출확대가 기대되며, Digital India은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 Clean India 정책으로 폐기물처리, 水처리 분야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

* Digital India 프로젝트 추진 후 인도내 스마트폰 판매가 급증하면서 2014-15년 한국의 對인도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각각 174.6%, 38.6% 증가

<모디 정부 주요 정책 과제 및 유망품목>

정책과제	사업 추진 내용
Make in India	· 인도를 글로벌 제조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25개 핵심 제조업 분야를 선정, 육성 (3개 업종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지분 100% 허용) · 2020년까지 GDP대비 현재 제조업 생산 비율을 15%→20% 제고 · 【유망품목】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조선, 석유화학, 합성수지, 기계 등
Smart City	· 2022년까지 인도 전역에 환경, 에너지, 주택, IT인프라가 완비된 스마트시티 100개를 건설 (산업회랑 인프라 개발과 연계 추진) · 【유망품목】 건설장비 및 부품, 전기발전설비, 철강, 케이블, LED 등
Digital India	· 2019년까지 정부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e-Governance 구현, 전국 지자체를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 전자상거래 촉진 등 · 【유망품목】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 통신장비 등
Clean India	· 2019년까지 인도 전국민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 전역 500개 도시 및 마을에 쓰레기 및 하수 처리장 추가 건립 · 【유망품목】 폐기물 처리설비, 수처리,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료 : 저자가 언론보도자료 종합

- 붙임 1. 한·인도 CEPA 양허 개선효과 기대품목 (HS2012, 137개)
 2. 일·인도 CEPA 대비 양허 열위품목 (HS2012, 63개)
 3. 일·인도 CEPA 대비 원산지 결정 열위기준 (HS2012, 962개). 끝.

붙임 1. 양허개선 효과 기대 품목 (HS2012, 137개)

<한·인도 CEPA 양허 개선효과 기대품목 ①>

(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한·인도 CEPA			對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對한국 수입	한국의 점유율
		양허 유형	'16년 세율	최종 세율				
29173600	테레프탈산과 그 염	SEN	8.13	6.25	890	14.2	429	48.1
87084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SEN	8.13	6.25	587	27.4	124	21.1
39033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EXC	10.00	10.00	157	22.5	122	78.0
87082900	기타 자동차 부분품	EXC	10.00	10.00	354	20.3	72	20.2
29071110	페놀	EXC	10.00	10.00	282	15.3	66	23.5
84073410	모터사이클 엔진	EXC	7.50	7.50	204	19.1	50	24.6
73181500	기타 철강제 스크루 볼트	EXC	15.00	15.00	298	16.6	38	12.7
84195090	열교환기	SEN	8.13	6.25	170	16.9	31	18.2
28030010	아세틸렌 블랙	SEN	6.50	5.00	168	14.6	31	18.3
85115000	기타 발전기	EXC	7.50	7.50	53	16.4	25	47.2
27101990	기타 석유, 역청유	SEN	6.50	5.00	629	11.5	24	3.8
870893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EXC	10.00	10.00	95	19.6	24	24.8
87089500	에어백과 그 부분품	RED	10.00	6.25	104	27.4	22	21.6
87089400	운전대, 스티어링 칼럼, 운전박스와 부분품	EXC	10.00	10.00	195	36.5	19	9.8
8708300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EXC	10.00	10.00	148	16.4	18	12.0
40111010	승용차용 공기타이어	EXC	10.00	10.00	152	17.7	17	11.5
29051220	이소 프로필 알콜	EXC	10.00	10.00	68	12.3	17	24.6
84181090	냉장, 냉동고	SEN	8.13	6.25	88	32.2	16	18.0
84729090	기타 사무용기계	RED	5.94	5.00	103	23.1	15	14.9
39042210	폴리레진	EXC	10.00	10.00	39	11.9	15	36.8
84148019	기타 기체 또는 진공펌프	RED	5.94	5.00	102	10.9	14	14.0
29161290	기타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RED	5.94	5.00	66	13.9	13	20.3
84143000	냉장, 냉동설비용 압축기	EXC	7.50	7.50	131	14.8	13	9.9

주 : EXC(양허제외), SEN(8년차 50% 잔존), RED(8년차 1~5% 잔존), 협상제외
 자료 : 한·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한·인도 CEPA 양허 개선효과 기대품목 ②>

(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한·인도 CEPA			對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對한국 수입	한국의 점유율
		양허 유형	'16년 세율	최종 세율				
85152190	기타 땀질, 납땀용 기기	RED	5.94	5.00	28	22.4	11	37.4
74081190	구리선(6mm 초과)	EXC	5.00	5.00	521	33.8	10	2.0
39209999	기타 플라스틱제 스트립	EXC	10.00	10.00	70	12.6	10	14.6
8511400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EXC	7.50	7.50	64	25.1	10	15.5
85014090	교류전동기	EXC	7.50	7.50	54	26.3	9	17.1
29053200	프로필렌글리콜	EXC	10.00	10.00	72	13.0	9	11.9
85122020	차량 조명용 기구	RED	5.94	5.00	69	29.9	8	11.6
85013119	전동기, 발전기(750w 이하)	EXC	7.50	7.50	74	23.8	8	10.6
84831099	기타 전동축	SEN	8.13	6.25	108	12.5	8	7.2
29161310	메타아크릴산	EXC	10.00	10.00	18	11.5	8	42.6
72279090	기타 합금강 봉	EXC	15.00	15.00	272	45.4	8	2.8
85369030	접속함	SEN	8.13	6.25	23	19.7	7	32.2
84212300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EXC	7.50	7.50	46	17.6	7	15.7
29053990	기타 불포화 2가 알코올	EXC	10.00	10.00	45	10.8	7	16.2
84152090	자동차용 공기조절기	EXC	10.00	10.00	18	13.0	7	40.0
8708800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EXC	10.00	10.00	68	18.3	7	9.5
59039090	기타 플라스틱 적층 방직용 직물	EXC	10.00	10.00	158	12.9	6	3.7
87087000	로드휠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SEN	8.13	6.25	136	20.5	6	4.2
72299090	기타 합금강 선	RED	5.31	5.00	43	15.0	6	13.0
85129000	전기식 조명 또는 신호용 기기 부분품	EXC	7.50	7.50	34	13.3	5	16.0
39202020	프로필렌 중합체 스트립	EXC	10.00	10.00	32	12.8	5	17.1
39072010	폴리옥시에틸렌	EXC	10.00	10.00	149	16.2	5	3.3
87081090	완충기와 그 부분품	EXC	10.00	10.00	35	24.4	5	13.6

주 : EXC(양허제외), SEN(8년차 50% 잔존), RED(8년차 1~5% 잔존), 협상제외
 자료 : 한·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한·인도 CEPA 양허 개선효과 기대품목 ③>

(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한·인도 CEPA			對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對한국 수입	한국의 점유율
		양허 유형	'16년 세율	최종 세율				
40169330	캐스킷, 와셔 및 기타 실	EXC	10.00	10.00	64	11.0	4	6.8
84148011	후드(수평면 길이 120cm 초과)	RED	5.94	5.00	300	28.6	4	1.4
84772000	플라스틱 공업용 압출기	RED	5.94	5.00	96	20.8	4	4.1
38170011	선형 알킬벤젠	EXC	10.00	10.00	243	14.4	4	1.6
39239090	기타 포장용기, 마개	SEN	8.13	6.25	52	14.6	4	7.5
83012000	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EXC	10.00	10.00	30	27.9	4	12.7
73182200	기타 와셔	SEN	8.13	6.25	32	13.1	4	11.6
840991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그 부분품	EXC	7.50	7.50	84	52.9	4	4.4
39205119	폴리로 만든 기타 판, 시트, 스트립	EXC	10.00	10.00	21	27.4	4	17.5
70091090	백미러	EXC	10.00	10.00	37	23.5	4	9.6
39069010	폴리아크릴아미드	EXC	10.00	10.00	47	17.7	4	7.6
870891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EXC	10.00	10.00	26	19.7	3	13.2
84129090	기타 엔진, 모터와 그 부분품	RED	5.94	5.00	76	22.5	3	4.5
87071000	승용차 차체	RED	5.94	5.00	43	106.1	3	8.0
63109040	합성 님마	EXC	10.00	10.00	44	39.7	3	7.4
40169390	기타 캐스킷, 와셔 및 기타 실	EXC	10.00	10.00	73	10.3	3	4.4
84212190	기타 여과기, 청정기	RED	5.94	5.00	98	16.5	3	3.2
73209090	기타 스프링	EXC	15.00	15.00	71	11.0	3	4.4
84472090	기타 황 편직기와 스티치 본딩기	RED	5.63	5.00	114	47.8	3	2.7
72193310	냉간압연(두께 1mm초과 3mm미만)	RED	5.31	5.00	12	15.0	3	25.5
54022090	폴리에스테르 강력사	EXC	10.00	10.00	53	14.8	3	5.8
32149090	기타 유리접합용 퍼티, 시멘트	SEN	8.13	6.25	21	17.0	3	14.1
85113020	기타 점화코일	EXC	7.50	7.50	16	31.9	3	18.5

주 : EXC(양허제외), SEN(8년차 50% 잔존), RED(8년차 1~5% 잔존), 협상제외
 자료 : 한·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한·인도 CEPA 양허 개선효과 기대품목 ④>

(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한·인도 CEPA			對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對한국 수입	한국의 점유율
		양허 유형	'16년 세율	최종 세율				
84812000	유압전송용 또는 공기압전송용 밸브	RED	5.94	5.00	49	17.0	3	6.0
84531000	원피, 모피, 피혁의 유평기 또는 가공기계	RED	5.94	5.00	24	18.6	3	11.2
84485900	기타 방사 방직기 부분품	RED	5.63	5.00	24	10.3	3	10.8
85362020	자동차단기	RED	5.94	5.00	13	13.0	3	20.4
39209119	비닐 부티랄제 판, 시트 필름	EXC	10.00	10.00	36	26.6	2	6.8
35069190	폴리머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SEN	8.13	6.25	56	12.6	2	4.4
39172990	기타 플라스틱제 관, 파이프, 호스와 연결구류	SEN	8.13	6.25	25	16.1	2	9.8
29094900	기타 에테르알코올 할로젠, 술폰, 니트로, 니트로소화 유도체	SEN	8.13	6.25	30	19.0	2	8.3
39076090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EXC	10.00	10.00	155	33.1	2	1.4
3904309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RED	5.00	5.00	21	16.2	2	10.4
39031990	기타 스티렌 중합체	EXC	10.00	10.00	31	19.2	2	6.7
60069000	기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EXC	10.00	10.00	48	22.4	2	4.3
29161100	아크릴산과 그 염	SEN	8.13	6.25	33	14.6	2	6.3
60053200	염색한 경편직 직물류	EXC	10.00	10.00	75	16.3	2	2.7
54024500	기타 나일론사	EXC	10.00	10.00	74	42.7	2	2.7
85122010	전조등, 미등, 정지등, 차폭등 및 깜박이	RED	5.94	5.00	41	25.5	2	4.8
40093100	연결구류 부착하지 않은 고무제 관, 파이프	EXC	10.00	10.00	15	30.2	2	12.5
39174000	연결구류	SEN	8.13	6.25	33	19.4	2	5.7
84212900	기타 원심분리기	RED	7.50	5.00	100	11.2	2	1.9
84099930	연료주입장치(주입펌프 제외)	RED	5.94	5.00	11	35.9	2	16.6
54076190	기타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EXC	10.00	10.00	61	28.0	2	3.0
29161400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EXC	10.00	10.00	102	16.1	2	1.8
40094100	기타 연결구류 부착하지 않은 고무제 관, 파이프	EXC	10.00	10.00	25	13.7	2	6.9

주 : EXC(양허제외), SEN(8년차 50% 잔존), RED(8년차 1~5% 잔존), 협상제외
 자료 : 한·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한·인도 CEPA 양허 개선효과 기대품목 ⑤>

(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한·인도 CEPA			對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對한국 수입	한국의 점유율
		양허 유형	'16년 세율	최종 세율				
27129010	석유왁스	EXC	10.00	10.00	27	14.7	2	6.2
290312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EXC	10.00	10.00	41	15.3	2	3.8
3921139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판, 시트	EXC	10.00	10.00	19	24.9	2	8.1
40111090	기타 승용차용 공기타이어	EXC	10.00	10.00	44	22.0	1	3.4
39235090	기타 플라스틱제 뚜껑, 마개	SEN	8.13	6.25	30	11.7	1	4.8
84151010	공기조절기	EXC	10.00	10.00	367	27.0	1	0.4
29159090	기타 초산 에스테르	EXC	10.00	10.00	156	11.7	1	0.9
39252000	문·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SEN	8.13	6.25	16	36.2	1	8.6
39173990	기타 플라스틱 관, 파이프, 호스와 연결구류	SEN	8.13	6.25	29	13.1	1	4.7
85011020	교류 전동기	EXC	7.50	7.50	23	19.0	1	6.0
39201019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판, 시트	EXC	10.00	10.00	47	16.7	1	2.9
39231090	플라스틱으로만든 상자, 케이스	SEN	8.13	6.25	47	25.6	1	2.8
85011011	소형 모터	EXC	7.50	7.50	22	24.3	1	5.9
84099912	피스톤 내연기관 부분품	RED	5.94	5.00	15	18.8	1	8.8
29182990	살리실산의 기타 에스테르	SEN	8.13	6.25	31	10.8	1	4.2
39181090	기타 플라스틱제 바닥 깔개	EXC	10.00	10.00	16	14.4	1	8.1
85044010	정지형 변환기	EXC	10.00	10.00	197	15.4	1	0.6
84485190	편직기, 본딩기 부분품	RED	5.63	5.00	11	15.8	1	10.9
85015290	전동기와 발전기(750w 초과 75kw 이하)	EXC	7.50	7.50	106	30.1	1	1.1
87033291	승용차(1,500cc 초과 2,500cc 이하)	EXC	125.00	125.00	62	32.9	1	1.8
39206290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제 판, 시트, 필름	EXC	10.00	10.00	39	22.6	1	2.9
70071100	수송기기용 안전유리	EXC	10.00	10.00	11	22.9	1	9.8
39205111	메틸메타크릴레이트제 판, 시트, 필름	EXC	10.00	10.00	22	16.6	1	4.9

주 : EXC(양허제외), SEN(8년차 50% 잔존), RED(8년차 1~5% 잔존), 협상제외

자료 : 한·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한·인도 CEPA 양허 개선효과 기대품목 ⑥>

(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한·인도 CEPA			對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對한국 수입	한국의 점유율
		양허 유형	'16년 세율	최종 세율				
85392120	텅스텐 할로겐 램프	SEN	8.13	6.25	23	37.0	1	4.8
39259090	기타 플라스틱제 건축용품	SEN	8.13	6.25	48	26.5	1	2.2
84514029	직물용 세탁기, 표백기 염색기	RED	5.63	5.00	26	20.5	1	3.8
84801000	금속주조용 주형틀	RED	5.94	5.00	11	18.2	1	9.4
84148090	기타 기체펌프	RED	5.94	5.00	110	15.3	1	0.9
76061190	알루미늄 판, 시트, 스트립	EXC	5.00	5.00	124	26.0	1	0.7
68138900	기타 마찰재료와 그 제품	EXC	10.00	10.00	32	30.7	1	2.9
85071000	피스톤식 엔진 축전지	EXC	10.00	10.00	20	26.4	1	4.5
74081990	기타 정제한 동선	EXC	5.00	5.00	161	54.8	1	0.5
29054500	글리세롤	EXC	10.00	10.00	40	26.7	1	2.1
39049000	기타 폴리 중합체	EXC	10.00	10.00	99	20.2	1	0.9
84162000	기타 노용 버너	RED	5.94	5.00	34	13.0	1	2.5
39232990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및 마개	EXC	10.00	10.00	26	12.0	1	2.9
29142200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SEN	8.13	6.25	40	12.6	1	1.8
39206919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판, 시트	EXC	10.00	10.00	18	10.9	1	3.8
72199013	니켈 평판압연제품 (두께 3mm이하)	RED	5.31	5.00	30	74.2	1	2.2
84148030	터보 충전기	RED	5.94	5.00	19	10.9	1	3.2
23099090	기타 사료용 조제품	EXC	30.00	30.00	94	15.8	1	0.6
84523090	재봉기용 바늘	EXC	7.50	7.50	16	12.5	1	3.6
85111000	점화플러그	EXC	7.50	7.50	11	23.4	1	4.8
39219094	기타 플라스틱제 판, 시트	EXC	10.00	10.00	13	25.9	1	4.1
70091010	차량용 백미러	EXC	10.00	10.00	12	15.0	1	4.5

주 : EXC(양허제외), SEN(8년차 50% 잔존), RED(8년차 1~5% 잔존), 협상제외
 자료 : 한·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붙임 2. 일·인도 CEPA 대비 양허 열위품목 (HS2012, 63개)

<일·인도 CEPA 대비 양허열위 품목 ①>

(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한·인도 CEPA			일·인도 CEPA			수입액		인도시장 점유율	
		양허	'16년 세율	최종 세율	양허	'16년 세율	최종 관세	對한국	對일본	한국	일본
85423900	집적회로	RED	5.9	5.0	B10	3.4	0.0	197	33	30.9	5.2
39042110	가소화 하지 않은 염화비닐수지	EXC	5.0	5.0	B10	3.4	0.0	158	132	21.0	17.6
98010013	전력 프로젝트용 기계	제외	10.0	10.0	B10	3.4	0.0	139	162	7.7	9.0
39041090	다른 물질 혼합하지 않은 염화비닐수지	EXC	5.0	5.0	B10	3.4	0.0	92	29	25.2	8.0
72255010	3mm미만 평판압연제품	RED	5.3	5.0	B5	0.0	0.0	75	25	73.9	24.4
85423100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RED	5.9	5.0	A	0.0	0.0	36	45	4.8	6.0
72193390	스테인레스강 평판압연제품	RED	5.3	5.0	B5	0.0	0.0	25	19	20.7	16.1
84159000	공기조절기의 부분품	RED	5.9	5.0	B10	4.5	0.0	23	33	7.3	10.5
39069090	기타 아크릴 중합체	EXC	12.5	12.5	B10	3.4	0.0	22	25	7.7	8.6
39019090	에틸렌 중합체	RED	5.0	5.0	B10	3.4	0.0	21	20	4.5	4.3
85472000	플라스틱 절연 물품	RED	5.9	5.0	B10	3.4	0.0	20	25	23.2	29.2
98010011	산업플랜트프로젝트용 기계	제외	10.0	10.0	B10	3.4	0.0	20	48	4.2	10.3
39042190	기타 염화비닐수지	EXC	5.0	5.0	B10	3.4	0.0	18	20	11.2	12.1
4002700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고무	EXC	12.5	12.5	A	0.0	0.0	18	20	19.4	21.9
28151200	액체 수산화나트륨	EXC	12.5	12.5	B10	3.4	0.0	17	16	12.8	11.9
98010019	기타프로젝트용기계	제외	10.0	10.0	B10	3.4	0.0	15	45	3.0	9.0
85030090	엔진 부분품	EXC	12.5	12.5	B10	3.4	0.0	7	15	1.8	3.8
84553000	압연기용 롤	EXC	12.5	12.5	B10	3.4	0.0	6	14	7.5	16.8
84829900	볼베어링	RED	5.9	5.0	B10	3.4	0.0	6	17	4.5	12.3
85371000	배전 제어용 보드	RED	5.9	5.0	B10	3.4	0.0	5	39	1.7	13.2
85044090	정지형 변환기	EXC	12.5	12.5	A	0.0	0.0	34	12	7.2	2.6

주 : 1) 對인도 수출액은 한, 일 비교를 위해 2015년 인도의 對한국, 對일본 수입통계를 활용

2) 한국 양허 : EXC(양허제외), SEN(8년차 50% 잔존), RED(8년차 1~5% 잔존), 협상제외

3) 일본 양허 : B10(11년차 철폐), B7(8년차 철폐), B5(6년차 철폐), A(즉시 철폐)

4) 한·인도 CEPA '양허', '16년 세율', '최종 세율'은 편의상 CEPA 협정상의 당해 HS코드(HS2002)들중 최고세율 품목의 양허와 세율만 기재

자료 : 한·인도 CEPA 양허표, 일·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일·인도 CEPA 대비 양허열위 품목 ②>

(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한·인도 CEPA			일·인도 CEPA			수입액		인도시장 점유율	
		양허	'16년 세율	최종 세율	양허	'16년 세율	최종 관세	對한국	對일본	한국	일본
39072090	기타 폴리에테르	EXC	12.5	12.5	B10	3.4	0.0	51	11	20.8	4.4
40025900	기타 합성고무	EXC	12.5	12.5	B10	4.5	0.0	31	10	45.9	14.7
85444999	절연 전선	RED	5.9	5.0	B10	3.4	0.0	10	10	5.0	4.7
39021000	폴리프로필렌	EXC	5.0	5.0	B10	3.4	0.0	46	10	7.0	1.5
72042190	스테인레스강 웨이스트와 스크랩	RED	5.0	5.0	B5	0.0	0.0	85	9	8.5	0.9
39012000	폴리에틸렌(비중0.94이상)	EXC	5.0	5.0	B10	3.4	0.0	15	9	2.0	1.1
84145990	기타 팬	RED	5.9	5.0	B10	3.4	0.0	9	7	9.3	8.0
73069090	철강제 관과 중공프로파일	SEN	8.1	6.3	B10	4.5	0.0	12	7	19.7	11.0
84831091	전동축 과 크랭크	SEN	8.1	6.3	B10	3.4	0.0	20	7	60.7	19.4
27101980	그리스	SEN	6.5	5.0	B7	2.5	0.0	7	6	10.5	9.1
72109090	기타 평판압연제품	EXC	5.0	5.0	B5	0.0	0.0	6	5	5.2	4.2
87089200	소음기와배기관	EXC	12.5	12.5	B10	4.5	0.0	32	5	50.4	7.5
39023000	프로필렌공중합체	EXC	5.0	5.0	B10	3.4	0.0	16	4	7.1	2.0
39029000	기타 프로필렌 중합체	EXC	5.0	5.0	B10	3.4	0.0	10	4	18.4	8.4
39039090	스티렌 중합체	EXC	5.0	5.0	B10	3.4	0.0	24	4	53.3	9.6
39011090	폴리에틸렌	EXC	5.0	5.0	B10	3.4	0.0	40	4	8.6	0.8
39011010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EXC	5.0	5.0	B10	3.4	0.0	13	3	1.7	0.4
84213990	여과기	EXC	12.5	12.5	B10	3.4	0.0	5	3	2.9	1.7
39061090	폴리메타크릴산메틸	RED	5.9	5.0	B10	3.4	0.0	23	2	62.4	6.2
83023090	차량용 비금속 장착구	EXC	12.5	12.5	B10	4.5	0.0	8	2	20.5	5.6
54024400	탄성사	EXC	10.0	10.0	B10	4.5	0.0	16	2	16.2	2.1

- 주 : 1) 對인도 수출액은 한, 일 비교를 위해 2015년 인도의 對한국, 對일본 수입통계를 활용
 2) 한국 양허 : EXC(양허제외), SEN(8년차 50% 잔존), RED(8년차 1~5% 잔존), 협상제외
 3) 일본 양허 : B10(11년차 철폐), B7(8년차 철폐), B5(6년차 철폐), A(즉시 철폐)
 4) 한·인도 CEPA '양허', '16년 세율', '최종 세율'은 편의상 CEPA 협정상의 당해 HS코드(HS2002)들중 최고세율 품목의 양허와 세율만 기재

자료 : 한·인도 CEPA 양허표, 일·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일·인도 CEPA 대비 양허열위 품목 ③>

(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한·인도 CEPA			일·인도 CEPA			수입액		인도시장 점유율	
		양허	'16년 세율	최종 세율	양허	'16년 세율	최종 관세	對한국	對일본	한국	일본
85443000	와이어링 세트	EXC	12.5	12.5	B10	3.4	0.0	8	2	10.2	2.4
85176990	기타 전화기기	RED	5.9	5.0	A	0.0	0.0	7	2	0.9	0.3
59032090	방직용 폴리우레탄 섬유	EXC	12.5	12.5	A	0.0	0.0	9	1	9.5	1.3
85442090	기타의동축도체	RED	5.9	5.0	B10	3.4	0.0	6	1	12.9	2.5
85446090	기타 전기도체	RED	5.9	5.0	B10	3.4	0.0	92	1	74.9	0.9
63090000	중고의류, 중고섬유제품	EXC	12.5	12.5	A	0.0	0.0	26	1	22.5	0.6
27101960	신전유(extend oil)	SEN	6.5	5.0	B10	4.5	0.0	488	1	46.9	0.1
39032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EXC	5.0	5.0	B10	3.4	0.0	9	1	62.3	4.6
85423200	메모리	RED	5.9	5.0	A	0.0	0.0	10	1	9.3	0.6
72279040	합금강 봉	EXC	7.5	7.5	B5	0.0	0.0	6	1	21.8	2.0
84189900	냉장, 냉동고 냉동기구	EXC	12.5	12.5	B10	3.4	0.0	15	0.4	18.0	0.5
55032000	폴리에스테르단 섬유	EXC	10.0	10.0	B10	4.5	0.0	9	0.3	8.3	0.3
39022000	폴리아소부틸렌	EXC	12.5	12.5	B10	3.4	0.0	19	0.2	68.4	0.7
84806000	광물성물질 성형용 주형	RED	5.9	5.0	B10	3.4	0.0	39	0.2	45.6	0.2
94012000	차량용의자	EXC	12.5	12.5	B10	4.5	0.0	5	0.1	10.8	0.3
28152000	수산화칼륨	SEN	8.1	6.3	B10	3.4	0.0	11	0.1	60.2	0.7
54024700	나일론사	EXC	10.0	10.0	B10	4.5	0.0	8	0.1	34.0	0.3
85272100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RED	5.9	5.0	B10	4.5	0.0	30	0.1	25.9	0.05
72082590	평판압연제품(4,75mm 이상)	RED	5.0	5.0	B5	0.0	0.0	5	0.03	42.5	0.2
85219020	영상기록, 재생용 기기	SEN	8.1	6.3	B10	4.5	0.0	6	0.01	23.4	0.03
85287100	영상수신기기	SEN	8.1	6.3	B10	4.5	0.0	10	0.003	2.0	0.001

주 : 1) 對인도 수출액은 한, 일 비교를 위해 2015년 인도의 對한국, 對일본 수입통계를 활용
 2) 한국 양허 : EXC(양허제외), SEN(8년차 50% 잔존), RED(8년차 1~5% 잔존), 협상제외
 3) 일본 양허 : B10(11년차 철폐), B7(8년차 철폐), B5(6년차 철폐), A(즉시 철폐)
 4) 한·인도 CEPA ‘양허’, ‘16년 세율’, ‘최종 세율’은 편의상 CEPA 협정상의 당해 HS코드(HS2002)들중
 최고세율 품목의 양허와 세율만 기재

자료 : 한·인도 CEPA 양허표, 일·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인도무역통계

붙임 3. 일·인도 CEPA 대비 원산지 결정 열위기준 (HS2012)

<일·인도 CEPA 대비 원산지 결정 열위기준 ①>

(개)

품목	HS코드 (HS6단위)	품목수 (HS8단위)	품목명	일본	한국
가공 1차 산품	160420	1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어류		6단위, 35%
	160520	1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새우, 보리새우		
	210111	4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6단위, 40%
	210120	4	차, 마테의 엑스, 에센스, 농축물 이들의 조제품		
	210610	1	단백질농축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물질		
가공 광물	280120	1	요오드		4단위
	280430	1	질소		6단위, 35%
	280700	2	황산, 발연황산		4단위, 30%
	281119	5	기타 무기산		6단위, 35%
	281122	1	이산화규소		
	281520	1	수산화칼륨		6단위, 30%
	281610	2	산화마그네슘, 과산화마그네슘		6단위, 35%
	281700	2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4단위
	281810	1	인조커런덤		
	281820	2	기타 산화알루미늄		6단위, 35%
	281990	1	기타 산화크롬, 수산화크롬		
	282010	1	이산화망간		6단위, 30%
	282510	5	히드라진, 히드록실아민의 무기염		
	282540	1	산화니켈, 수산화니켈		
	282550	1	산화동, 수산화동		
	282560	2	산화게르마늄, 산화지르코늄	6단위	
	282580	1	산화안티몬		
	282590	6	기타 무기염기, 금속산화물, 금속수산화물, 금속과산화물		
	282630	1	육플루오르화 알루미늄산나트륨		
	282735	1	니켈염화물		
	282739	5	기타 염화물		
	283090	2	기타 황화물, 폴리황화물		
	283311	1	황산이나트륨		6단위, 35%
	283324	1	황산니켈		
	283325	1	황산동		
	283327	1	황산바륨		
	283329	6	기타 황산염		
	283340	1	기타 질산염		
	283429	4	과산화황산염		
	283525	1	오르토인산수소칼슘		
	283526	3	기타 인산칼슘		
	283539	1	기타 폴리인산염		
	283650	1	탄산칼슘		
	283699	4	기타 탄산염, 과산화탄산염		
	283711	1	시아나이드나트륨, 산화시아나이드나트륨		6단위, 30%
	283719	3	기타 시안화물, 산화시아나이드나트륨		
	283990	2	기타 규산염, 알카리금속 규산염		

주 : 4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 00%(부가가치기준 00%이상 충족)

자료 : 한·인도 CEPA 협정문, 일·인도 CEPA 협정문 비교

<일 · 인도 CEPA 대비 원산지 결정 열위기준 ②>

(개)

품목	HS코드 (HS6단위)	품목수 (HS8단위)	품목명	일본	한국
가공 광물	284020	2	기타 봉산염	6단위	6단위, 35%
	284130	1	중크롬산나트륨		
	284190	1	기타 산화금속산염, 과산화금속산염		
	284290	3	기타 무기산염, 과산화산염		
	284390	4	기타 귀금속의 화합물, 아말감		
	284690	4	기타 희토류금속, 이트륨, 스칸듐		
	284990	3	기타 탄화물		
	285000	6	수소화물, 질화물, 아지화물, 규화물, 붕화물		
	285300	6	기타 무기화합물 액체공기 압축공기 및 아말감		
고무 화학	290110	1	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290	6	기타 환식탄화수소		
	290339	5	기타		
	290544	1	디-글루시톨(소르비톨)		
	290559	1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 술폰화, 니트로화 유도체		
	291429	2	기타 포화, 불포화 지환식, 시클로테르펜 케톤		
	320420	2	합성 유기형광 증백제		
	320649	5	기타 착색제 및 그 조제품		
	320910	2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재로한 페인트와바니쉬		
	321000	7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 피혁가공용의 조제수성안료		
	330410	1	입술화장용 제품류		
	330420	1	눈화장용 제품류		
	330430	1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91	3	미용제품류(분말상의것)		
	330499	6	기타 미용 또는 화장용 제품류		
	330510	2	샴푸		
	330530	1	헤어레커		
	330590	7	두발용의 기타 제품류		
	370790	2	사진용의 기타 화학조제품 및 단일물품		
	380400	3	목재펄프제조시 생기는 폐액		
	380510	3	검테레빈유, 우드테레빈유, 황산테레빈유		
	380690	2	로진과 수지산의 기타 유도체, 로진스프릿과 로진유		
	380891	17	살충제		
	380892	6	살균제		
	380893	6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380894	1	소독제		
	380899	2	기타		
	380991	9	섬유공업용 완성가공제, 염색캐리어, 드레싱, 매염제		
	380992	1	제지공업용의 완성가공제, 염색캐리어, 드레싱, 매염제		
	381121	1	윤활유첨가제(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한것)		
	381190	1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		
	381210	1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381220	2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주 : 4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 00%(부가가치기준 00%이상 충족)
 자료 : 한 · 인도 CEPA 협정문, 일 · 인도 CEPA 협정문 비교

<일·인도 CEPA 대비 원산지 결정 열위기준 ③>

(개)

품목	HS코드 (HS6단위)	품목수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고무 화학	381230	4	고무, 플라스틱 산화방지 조제품		6단위, 35%
	381300	1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381400	2	신나, 조제한 페인트제거제 바니쉬제거제		
	381511	1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381512	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		
	381519	1	기타 촉매		
	381590	1	반응 개시제, 반응촉진제, 촉매조제품		
	381600	1	내화시멘트, 내화모르타르, 내화콘크리트		
	381700	3	혼합 알킬벤젠과 혼합 알킬나프탈렌		
	381800	2	전자공업에 사용하기위해 도프 처리된 화학원소와 화학화합물		
	381900	2	유압제동액, 기타 조제 유압전동액		
	382410	1	조제점결제		
	382440	2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조제첨가제		
	382490	21	조제 점결제, 화학공업-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390530	1	폴리비닐알코올		6단위, 25%
	391722	1	프로필렌 중합체 관, 파이프, 호스(경질의것)	6단위	6단위, 35%
	391723	2	염화비닐 중합체 관, 파이프, 호스(경질의것)		
	391729	6	기타 플라스틱 관, 파이프, 호스(경질의것)		
	391731	1	플라스틱 관, 파이프, 호스(연질의것)		
	391732	3	플라스틱 관, 파이프, 호스(연결구가 없는것)		
	391733	1	플라스틱 관, 파이프, 호스(연결구가 있는것)		
	391739	3	플라스틱 기타 관, 파이프, 호스		
	391740	1	플라스틱 관, 파이프 등의 연결구류		
	391810	2	염화비닐중합체의 바닥 깔개, 벽피복재, 천정 덮개		
	391910	1	플라스틱제 접착성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스트립(물상의것)		
	391990	3	플라스틱제 기타 접착성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스트립		
	392010	6	에틸렌 중합체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20	3	프로필렌 중합체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30	3	스티렌 중합체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43	1	염화비닐중합체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가소제 6%이상)		
	392049	1	기타 염화비닐중합체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51	6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59	6	기타 아크릴중합체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61	3	폴리카보네이트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62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69	12	기타 폴리에스테르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71	7	재생셀룰로오스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79	6	셀룰로오스 유도체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92	6	폴리아미드의 기타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99	19	기타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112	1	염화비닐 중합체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113	2	폴리우레탄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119	1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190	22	플라스틱제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주 : 4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 00%(부가가치기준 00%이상 충족)
 자료 : 한·인도 CEPA 협정문, 일·인도 CEPA 협정문

<일·인도 CEPA 대비 원산지 결정 열위기준 ④>

(개)

품목	HS코드 (HS6단위)	품목수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고무 화학	392310	5	플라스틱제 상자, 케이스, 바구니, 기타 유사물품	6단위	6단위, 35%
	392321	1	에틸렌 중합체의 색과 백		
	392329	2	기타 플라스틱제의 색과 백		
	392330	2	카보이병, 병, 플라스크 및 기타 유사물품		
	392340	1	플라스틱제 스포, 콕, 보빈, 기타 유사물품		
	392350	2	플라스틱제 뚜껑, 마개, 캡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392390	3	플라스틱제 기타 물품운반 용기, 포장용기		
	392410	2	플라스틱제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392510	1	플라스틱제 저장기(용량 300L초과)		
	392530	1	플라스틱제 셔터, 블라인드		
	392590	2	플라스틱제 기타 건축용품		
	392630	2	플라스틱제 가구용 부착구		
	392690	16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		
섬유 의류	500400	2	견사	4단위	4단위, 40%
	510400	2	양모, 섬수모		
	510510	1	카드한 양모		
	510521	1	코옴한 양모		
	510529	2	기타		
	510531	1	산양 캐시미어		
	510539	1	기타 카드 코옴한 양모 수모		
	510540	1	카드 또는 코옴한 동물의 거친 털		
	530310	2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 섬유		
	530390	2	기타 황마		
	530500	6	코코넛, 아라미 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640110	2	신발류		6단위, 40%
	640192	2	발목을 덮는 방수신발		6단위, 35%
	640199	2	기타 방수신발		6단위, 40%
	640212	2	스키부츠, 크로스컨츄리 스키화, 스노우보드부츠		
	640219	2	기타 스포츠용 신발		
	640220	2	갑피 끈을 플러그 삽입식으로 조립한 신발		6단위, 35%
	640291	2	발목을 덮는 신발	6단위, 40%	6단위, 40%
	640299	2	바닥과 갑피를 고무,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640312	1	스키부츠, 크로스컨츄리 스키화, 스노우보드부츠		
	640319	3	기타 스포츠용 신발		
	640320	11	바닥과 갑피가 가죽제인 신발		
	640340	1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고 갑피는 가죽제인 신발		
	640351	5	바닥과 갑피가 가죽제인 발목을 덮는 신발		
	640359	4	바닥과 갑피가 가죽제인 신발		
	640391	3	바닥이 고무, 플라스틱, 가죽제, 갑피는 가죽제인 발목을 덮는 신발		
	640399	3	바닥이 고무, 플라스틱, 가죽제, 갑피는 가죽제인 신발		
	640411	3	정구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	6단위, 35%	6단위, 35%
	640419	3	바닥이 고무, 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제인 신발		
	640420	1	바닥이 가죽, 갑피는 방직용 섬유제인 신발		
	6405	3	그밖의 신발류		4단위, 40%

주 : 4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 00%(부가가치기준 00%이상 충족)

자료 : 한·인도 CEPA 협정문, 일·인도 CEPA 협정문

<일 · 인도 CEPA 대비 원산지 결정 열위기준 ⑤>

(개)

품목	HS코드 (HS6단위)	품목수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섬유류	640610	5	갑피와 그 부분품	4단위	6단위,35%	
	640620	1	고무, 플라스틱제 바깥바닥 및 뒷굽		6단위,40%	
	640690	6	가죽제, 목제 신발류 부분품	6단위	6단위,35%	
	650400	1	모자			
	6505	2	모자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	4단위		
	6506	4	그 밖의 모자			
	6507	1	모자 부분품			
금속 제품	701810	3	유리세공품	6단위	4단위	
	701890	2	기타 유리세공품			
	720249	1	기타 페로크롬			
	720260	1	페로니켈			
	720299	11	페로알로이			
	720310	1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6단위,35%	
	720390	1	기타 해면질 철제품		4단위	
	720421	2	스테인레스강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29	3	기타 합금강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49	1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50	1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510	7	철강 알갱이와 가루			
	720521	1	합금강의 알갱이와 가루			
	720529	2	기타 알갱이와 가루			
	720610	3	잉곳			
	720690	6	기타 잉곳			
	720711	4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철, 비합금강 반제품			
	720712	4	기타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철, 비합금강 반제품			
	720719	3	철, 비합금강의 기타 반제품(탄소함유량 0.25%미만)			
	720720	4	철, 비합금강의 기타 반제품(탄소함유량 0.25%이상)			
	730830	1	철강제 문, 창문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6단위,25%
	730840	1	비계, 차단기, 평도 받침에 사용되는 지주			6단위,35%
	730890	8	기타 철강제 구조물과 그 부분품			6단위,25%
	730900	5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용적 300리초과)			6단위,35%
	731010	3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50리이상 300리이하)			
	731029	3	철강제의 밴드,사슬			6단위
	731100	4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 철강제 용기			
	731210	4	철강제 연선, 로프, 케이블			
	731290	1	철강제 밴드, 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			
	731412	1	스테인레스제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			
	731414	2	스테인레스제 직조한 클로드			
	731419	2	기타 철강제의 직조한 제품			
	731449	2	기타 그릴 망 및 울타리			
	731511	1	철강제 롤러체인			
	731512	3	철강제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			
	731519	1	철강제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 부분품			
	731582	1	철강제 용접한 링크의 기타 체인			

주 : 4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 00%(부가가치기준 00%이상 충족)
 자료 : 한 · 인도 CEPA 협정문, 일 · 인도 CEPA 협정문

<일·인도 CEPA 대비 원산지 결정 열위기준 ⑥>

(개)

품목	HS코드 (HS6단위)	품목수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금속 제품	731589	1	기타 철강제 체인	6단위	6단위,35%
	731600	2	철강제의 닛과 그 부분품		
	731811	2	철강제 모치스크루		
	731814	1	철강제 셀프탐핑 스크루		
	731815	1	철강제 기타 스크루와 볼트	6단위,35%	6단위,40%
	731816	1	철강제 너트	6단위	6단위,35%
	731819	1	철강제 철강제의 기타 나선가공한 제품		
	731821	1	철강제 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731822	1	기타 와셔		
	731823	1	철강제 리베트	6단위,35%	6단위,40%
	731824	1	철강제 코터와 코터핀		
	731829	2	철강제 나선가공하지 않은 기타 제품		
	731940	3	철강제 안전핀	6단위	6단위,35%
	731990	1	철강제의 돛바늘, 크로세 뜨게질 바늘, 자수용 천수침	4단위,35%	4단위,40%
	732010	4	철강제 판상스프링과 그 판		
	732020	1	철강제 나선형 스프링		
	732090	3	철강제의 기타 스프링		
	732111	3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검용의 것	6단위	6단위,35%
	732119	2	가스와 기타연료 검용의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82	1	철강제 액체연료용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기구		
	732211	1	주철제의 방열기와 그 부분품	6단위,35%	6단위,40%
	732310	1	철강의 올, 용기 세정용구, 폴리싱 패드, 글러브 및 유사품		6단위,35%
	732393	2	스테인레스강제 식탁용품, 부엌용품, 기타 가정용품		
	732399	3	기타 철강제 식탁·부엌·기타 가정용품 및 그 부분품		
	732421	1	주철제의 목욕통		
	732490	1	철강제의 기타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6단위,25%
	732599	7	기타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732619	2	기타 단조물		
	732620	2	철강선재의 제품		
	732690	10	철강제의 기타제품	6단위	6단위,35%
	740200	2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740313	1	빌레트		
	740319	1	기타		
	740329	1	기타 동 합금 (동의 마스터얼로이는 제외)		4단위
	740400	7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40500	1	동의 마스터얼로이		
	740610	1	동제 비충상 조직의 분		
	740620	1	동제 충상 조직의 분과 플레이크	6단위,35%	6단위,35%
	740710	7	정제한 동의 봉과 프로파일		
	740721	4	동 아연 합금(황동)의 봉과 프로파일		
	740729	4	기타 동합금의 봉과 프로파일		
	740811	2	정제한 동선(6mm 초과)		
	740819	3	정제한 동의 기타 선		
	740821	2	동 아연 합금 선		
					6단위,25%

주 : 4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 00%(부가가치기준 00%이상 충족)
 자료 : 한·인도 CEPA 협정문, 일·인도 CEPA 협정문

<일 · 인도 CEPA 대비 원산지 결정 열위기준 ⑦>

(개)

품목	HS코드 (HS6단위)	품목수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금속 제품	740822	3	동, 니켈, 아연 합금의선	6단위	6단위, 25%
	740829	2	기타 동합금 선		
	740911	1	코일모양 구리 판, 시트, 스트립		6단위, 35%
	740919	1	기타 코일모양 구리 판, 시트, 스트립		
	740921	1	코일모양 황동 구리 판, 시트, 스트립		
	740929	1	기타 코일모양 황동 구리 판, 시트, 스트립		
	740931	1	코일모양 청동 구리 판, 시트, 스트립		
	740939	1	기타 코일모양 청동 구리 판, 시트, 스트립		
	740940	1	백동, 양백으로 만든 판, 시트, 스트립		
	740990	1	기타 백동, 양백으로 만든 판, 시트, 스트립		
	741011	1	정제한 구리로 만든 박(보강재로 뒷면 붙이지 않은 것)		6단위, 25%
	741012	1	구리합금으로 만든 박(보강재로 뒷면 붙이지 않은 것)		6단위, 35%
	741021	1	정제한 구리로 만든 박(보강재로 뒷면 붙인 것)		
	741022	1	구리합금으로 만든 박(보강재로 뒷면 붙인 것)		
	741110	1	정제한 동제 관		6단위, 25%
	741121	1	황동제 관		
	741122	1	백동, 양백제 관		
	741129	1	기타 동 합금제 관		6단위, 35%
	741210	1	정제한 동제 관 연결구류		6단위, 25%
	741220	4	동 합금제 관 연결구류		
	741300	1	동제 연선, 케이블, 밴드 및 유사제품	6단위	6단위, 35%
	741510	1	동제 못, 압정, 제도용, 핀, 스테이플 및 유사품		
	741521	1	동제 와셔		
	741533	2	스크루, 볼트와 너트		
	741539	2	기타 나선형의 동제 못, 압정		
	741820	2	위생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750210	1	합금하지 않은 니켈		4단위
	750220	5	니켈 합금		
	750300	2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50400	1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750511	2	합금하지 않은 니켈의 봉과 프로파일		
	750512	2	니켈합금의 봉과 프로파일		
	750522	1	니켈 합금의 선		
	750610	1	합금하지 않은 니켈의 판, 시트, 대, 박		
	750620	1	니켈 합금의 판, 시트		
	750712	1	니켈 합금제의 관		
	760120	5	알루미늄 합금		6단위, 25%
	760519	3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제 기타 선		
	761410	1	알루미늄제 연선, 케이블		6단위, 35%
	761519	5	알루미늄제 식탁용품, 부엌용품, 기타 가정용품		6단위, 25%
	761610	1	알루미늄제 못, 압정, 스테이플, 스크루, 볼트, 너트		
	761699	4	알루미늄제 그릴, 망 및 울타리		
	780600	4	아연제 기타 제품	4단위	
	790390	1	아연 플레이크		

주 : 4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 00%(부가가치기준 00%이상 충족)

자료 : 한 · 인도 CEPA 협정문, 일 · 인도 CEPA 협정문

<일 · 인도 CEPA 대비 원산지 결정 열위기준 ⑧>

(개)

품목	HS코드 (HS6단위)	품목수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금속 제품	790700	2	아연제의 기타 제품	6단위	6단위, 35%
	810110	1	텅스텐의 가루		6단위, 25%
	810194	1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		
	810196	1	텅스텐 선		
	810199	2	기타 텅스텐제품		
	810210	1	몰리브데늄 가루		
	810295	2	몰리브데늄 붕		
	810296	1	몰리브데늄 선		6단위, 35%
	810299	1	기타 몰리브데늄제품		
	810600	4	비스머드와 그 제품		6단위, 25%
	810720	1	카드뮴 괴, 가루		
	820150	1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		6단위, 35%
	820210	3	수동식 톱		
	820220	1	밴드소 날		
	820231	1	원형톱날 (슬리팅, 슬로팅 톱날을 포함)		
	820239	1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 기타(부분품 포함)		
	820291	2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820299	2	기타 톱날		
	820310	1	줄과 이와 유사한 용구		
	820320	1	플라이어, 집게, 핀셋 등 공구		
	820330	1	금속 절단용 가위		
	820340	2	파이프 커터, 볼트 크로퍼, 천공편치 등 공구		
	820411	2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 (조정할 수 없는 것)		
	820412	2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 (조정할 수 있는 것)		
	820420	1	호환성 스패너 소켓		
	820510	1	드릴링, 드레딩 또는 탭핑용 공구		
	820540	1	스크루드라이버		
	820551	2	가정용 수공구		
	820559	5	기타 수공구		
	820570	1	바이스, 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820590	4	수공구, 블로우램프, 바이스, 클램프, 앤빌 등		
	820600	2	수동식 톱, 톱날, 수공구, 블로우 램프 등		
	820713	1	착암용, 굴착용 공구(작용 부분이 서메트제의 것)		
	820719	1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서메트제의 것 제외)		
	820720	1	금속의 인발 및 압출용 다이		
	820730	1	프레싱, 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		
	820740	2	탭핑, 드레딩용 호환성 공구		
	820750	1	드릴링용 호환성 공구		
	820760	2	보링, 브로칭용 공구		
	820770	2	밀링용 공구		
	820780	1	터닝용 공구		
	820790	4	기타 호환성 공구		
	820810	1	금속가공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820	1	목재가공용 칼과 절단용 칼날		

주 : 4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 00%(부가가치기준 00%이상 충족)
 자료 : 한 · 인도 CEPA 협정문, 일 · 인도 CEPA 협정문

<일·인도 CEPA 대비 원산지 결정 열위기준 ⑨>

(개)

품목	HS코드 (HS6단위)	품목수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금속 제품	820830	1	부엌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용 칼날	6단위	6단위, 35%
	820890	5	기계용 또는 기구용 칼과 칼날		
	820900	2	공구용 판, 봉, 팁		
	821000	1	수동식 기계기구		
	821192	1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821193	2	칼날이 고정된 것 이외의 칼		
	821194	1	칼날		
	821220	3	안전면도날		
	821591	1	귀금속으로 도금된 스푼, 포크, 국자 등		
	830120	1	비금속제 모타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830140	2	비금속제 기타 자물쇠		
	830150	1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의 자물쇠		
	830160	1	비금속제의 자물쇠 부분품		
	830170	1	별도로 제시되는 비금속제 열쇠		
	830210	3	비금속제의 경첩		
	830220	1	비금속제의 카스터		6단위, 40%
	830230	2	모터차량용 장착구 및 부착구		
	830241	3	건물용 비금속제 장착구, 부착구		6단위, 35%
	830242	1	가구용 비금속제 장착구, 부착구		
	830249	1	비금속제의 기타 장착구, 부착구		
	830250	1	비금속제의 모자걸이, 브래킷		
	830260	1	비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		
	830520	1	스트립 모양 스테이플		
	830629	3	기타 비금속제 벨, 징		
	830710	1	철강제 플렉시블 튜빙		
	830790	1	기타 비금속제 플렉시블 튜빙		
	830810	3	비금속제의 후크, 아이 및 아이렛		
	830890	8	비금속제의 유금, 유금이 붙은 프레임, 버클, 구슬		
정밀 기계	911390	2	기타 휴대용시계 줄		
기타 제조품	940190	1	의자 부분품		
	940421	2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 매트리스		
	940429	3	기타 재료의 매트리스		
	960500	2	개인용 여행세트		
	961210	4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		

주 : 4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 00%(부가가치기준 00%이상 충족)
 자료 : 한·인도 CEPA 협정문, 일·인도 CEPA 협정문

[참고문헌]

- 강인수,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한·인도 CEPA 개선방안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2014.
- 김영귀, 외 4명, ‘한·인도 CEPA 이행상황평가 최종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명진호,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국제무역연구원, 2009.
- 명진호·조성대, ‘일·인도 CEPA 체결이 우리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1.
- 송송이, ‘2014년 한·인도 무역동향 및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4.
- 송송이, ‘인도 수출애로 및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5.
- 성한경·이순철, ‘한·인도 CEPA 활용률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인도학회, 2014.
- 이용, 외4명,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이용,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정혜선·이근화,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6년 전망’, 2015.
- KOTRA, ‘일·인도 CEPA 체결의 파급효과와 현지반응’, 2011.
- 일·인도 CEPA 협정문
- 한·인도 CEPA 협정문
- FTA 강국, KOREA, fta.go.kr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

Trade Focus 2016년 32호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김극수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6년 9월 27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